- 2021년도 제1회 충청남도 -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복지환경위원회]

충 청 남 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여성가족정책관실

1.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공연 추진 ····· 1

2.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 9

3. 순국열사 유관순 서거 101주기 기념 추모제 ····· 11

4.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 15

5. 새일센터 지정운영 ····· 19

6.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21

7.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 23

8.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시군) ····· 25

9.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도) ····· 27

10.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시군) ···· 29

11.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 31

12.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 33

13.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 35

14.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 37

15. 성폭력상담소 운영 ····· 39

16.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비수급생계비) ···· 41
17.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 43
18.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 45
19.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바라기센터) ····· 47
20.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시군) ····· 49
21.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51
22.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 53
2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 55
24.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 57
25.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운영 ····· 59
26.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61
27.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보조학습비 ····· 63
28.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65
29.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 67
30.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69
31.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71

32.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73
33.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 77
34.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79
35. 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81
36.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83
37.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85
38. 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 87
39.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 89
40. 가족역량강화지원 ····· 91
41. 아이돌봄지원 ····· 93
42. 글로벌 다문화 다공감 에세이 ····· 95
43. 다문화이주민 지원사업 ····· 97
44.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 99
45.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101
46.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 103
47.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지원 ····· 123

50.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 125
51.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시군)(도민참여) ····· 127
52.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 129
53.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131
54. 시군 학교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 133
55.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설치 ····· 135
56. 마을학교 공간조성 지원 ····· 137
57. 그린카페(청소년들의 쉼터) 조성 ····· 139
58. 청소년 쉼터 운영 ····· 141
59.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 143
60.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145
61.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147
62.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 149
63. 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 151
64.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 153
65.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 155

66.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목경정, 세부사업경정) …… 157
67.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과목경정, 세부사업경정) … 159
68.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시군, 세부사업경정) … 161
69. 청소년성문화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 163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공연 추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유관순상 운영
	통 계 목	행사운영비(201-03)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관순 열사의 서거 101주년을 기념하여 열사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고취시키고, 충절의 고장으로서의 도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충남도청 문예회관

○ 사업 기간 : 2021. 7. ~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0,000천원(도비 100%)

○ 사 업 량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창작연극 공연 개최(대상 : 충남도청 전 직원)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행사용역의뢰)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창작연극 공연 개최(1일 2회 공연 / 무대제작, 준비 등 총 3일 소요)

- 시놉시스 :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일제강점기 시절(과거)'과 '열사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 그에 반해 증명하려는 자들의 충돌(현재)', 두 이야기가 만나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자유와 평화정신을 알림

※ 극단: 어니스트 씨어터(연출-오광욱, 유관순역-배다해 등)

○ 신규편성 사유

- 우리 도는 '02년부터 금년까지 '20회'째, 대한민국 유일의 '유관순상' 운영 중
- 유관순 열사는 충청남도가 배출한 '우리나라의 대표적 여성 항일 독립운동가'로서 최근, 서훈등급 격상('19년, 3→1등급), 열사 서거 100주년 추모('20년) 등 열사의 숭고한 애국애족 정신 및 불굴의 기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이 평가 받고 있음
- 이에,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를 맞이하여 '유 열사의 희생정신'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창작연극을 개최하여 충청남도 공직자라면 필수 갖추어야 할 '나라사랑 정신'을 함양코자 함

※ 당초, 유관순 열사 순국 100주기를 맞이하여 '20년도 하반기 공연을 추진 중에 코로나19 확산세로 인하여 '21년도로 잠정 연기

○ 지원 근거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공연진행 크레이브팀 17,380 ○ 예술감독, 연출, 조연출, 저작권사용료(대본,노래,음향), 안무가, 조안무, 음악코치감독 등 ▣ 출연진 36,300 ○ 주연, 조연, 앙상블 등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 조명 5,390 ○ 디자이너, 조명감독, 조명조감독, 조명크루 등 ▣ 음향 8,580 ○ 음향감독, 음향크루, 음향조감독, 음향장비 ▣ 기획 12,496 ○ 기획총괄팀장, 기획보조, 하우스팀(진행), 스탭 등 ▣ 무대 18,370 ○ 무대디자인, 무대제작, 무대감독, 무대조감독, 무대크루 등 ▣ 의상 및 소품 7,810 ○ 의상감독, 의상제작 및 관리, 의상팀, 소품팀, 분장팀 등 ▣ 연습진행 14,549 ○ 식대, 연습실 대관, 공연보험, 진행비 등 ▣ 셋업 & 공연 진행비 9,125 ○ 식대(스태프, 배우), 이동비, 용달 운송비, 무대상하차 크루 등	
총사업비	**130,000천원 (도비 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000			**130,000**	**130,000**		신규
도 비	130,000			**130,000**	**130,00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정낙도 (행) 4971	심성용 (행) 4983

참고1 창작연극 사진



▲ 충남 천안시 천안도솔광장 야외공연장에서 공연된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 창작 연극 유관순 9월의 노래'.



양승조 충남지사가 10일 천안도솔광장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유관순 열사 서거 100주년 기념 창작 연극–유관순 9월의 노래'를 관람한 후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충남도청 제공

참고2 공연 시놉시스

시놉시스

과거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과 현대에서도 잔존하는 친일 세력의 치열한 공방!

과거와 현대를 오가며 우리 현대인의 평화, 자유의식을 재조명한다.

'유관순 열사의 독립운동을 다룬 일제강점기 시절(과거)'과
'열사의 행적을 지우려는 자, 그에 반해 증명하려는 자들의 충돌(현재)',
두 이야기가 만나 오늘날의 관객들에게 유관순 열사의 자유와 평화정신을 알린다.

---

1. 일제강점기, 독립을 외치다. – [과거]

이화학당에 다니는 유관순은 학우들과 함께 3.1만세 운동에 참가했다가 체포된다. 이화학당 프라이 교장은 학교 학생들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며 석방을 요구한다. 일본 경찰은 유관순이 어린 나이의 여성이라 업신여겨 염려하지 않고 풀어준다. 이를 빌미로 민주주의, 민족자결주의 정신을 기반으로 하는 신교육기관인 이화학당에 휴교령을 내린다.

감옥에 갇혀있던 유관순은 수감자들의 고문받는 모습을 목격한다. 그녀는 공포보단 일제의 반인류적 태도에 분노를 감추지 못한다. 천안으로 돌아온 유관순은 아우내 장터에서 직접 제작한 대량의 태극기를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4.1만세운동을 주도한다. 다시 체포된 유관순을 마주한 일본 경찰은 유관순이 달갑지 않다.

서대문형무소장은 "일본 여성도 하지 못하는 일을 고작 조센징이, 그것도 어린 여자아이가?"라며 경계심을 품는다. 일본 계집들처럼 유관순 역시 순종하게 만들도록 교도관들에게 명령한다. 일본은 유관순이란 존재가 역사에 기록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명령을 받은 일본 경찰, 고문관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관순을 회유, 협박한다. 그러나 그녀의 의지는 절대 꺾이지 않는다. 일본은 같은 조선인인 정춘영을 이용하여 유관순의 의지를 꺾어보려 하지만….

2. 열사의 기록을 지우려는 자들 VS 열사의 유골을 발굴하고 증명하려는 자들 – [현대]

세계여론에 큰 영향권을 행사하는 뉴욕타임스가 '세계역사에서 주목할 여성으로 유관순 열사를 선정하면서 모든 관심이 열사에게 집중된다. 열사의 삶과 죽음이 밝혀질수록 일제의 악행은 더욱 잔인하게 드러난다.

일본 자본가 아베 노부유키는 한국 역사학자 이춘원을 만나 유관순 열사 지우기 계획을 세운다. 이들은 유관순은 본래 여자 깡패, 소매치기였으며 이화여대 김활란 교장과 그 선배 박인덕이 친일 행위를 덮기 위해 만든 가공인물이라는 가짜 언론을 만들어낸다. 급기야 당시의 수용소는 역대 최고의 복지시설을 갖췄으며 일제의 식민통치는 한국의 미래를 위한 정당한 경제 사업임을 주장한다.

한국의 지식층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유관순 열사의 서훈 등급 격상 희망' 청원이 올리지만 일본이 뿌려놓은 데이터 스모그로 인해 수포로 돌아간다.

뉴욕타임스의 조명으로 유관순 열사의 유골이 재조명되며 일본계 민국인으로 알려진 DPAA(포로실종자확인국) JPAC(합동전쟁포로실종자확인사령부) 유골 발굴팀 소속 박사 Vivi가 이태원에 도착한다. 만약 유관순 열사의 유골이 발견되면 '열사의 흔적 지우기'는 수포로 돌아간다. 한국 역사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이춘원은 유골 발굴을 하려는 Vivi박사를 만나 발굴 작업을 훼방하려는데….

참고3 스텝 소개

스텝 소개



연출·극작·움직임 오광욱

극단 Honest Theater 대표
동서울대학교 겸임교수
대진대학교, 수원대학교 외래교수
보이체크 – 오르다예술극장
Dream, 춤 꿈이 되다. – 부평아트센터
굿바디 – 국립극장 별오름
뮤지컬 4B – 구리아트홀 코스모스대극장
덕혜옹주 – 국립극장 별오름 & 연수아트홀
정의봉 – 국립극장 별오름
사법살인 59 – 인천 떼아뜨레 극장_ 인천 신진예술가 선정작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 천안예술의전당
경기문화재단 공공예술프로젝트 선정작 [전통시장 웹드라마] 감독



음악감독 뮤즈그레인 (김승재&변동준)

2017 MBC 다큐에세이 [여기 이 사람]
2017 Green Blue Festival – Line Up
2017 JUMF – Line Up
2017 정규 앨범 [눈부신 밤] 발매
2018 Japan Tour [Tokyo], [Kobe]
2018 Single [Light] 발매
2018 Single [Into the Rain] 발매



의상감독 임소라

동덕여자대학교 의상학 박사 수료
동덕여자대학교 의상학 석사
일본 문화여자대학 복장학과
패션크리에이티브 학사
~2018 서울현대직업전문학교 교수
2012 서울종합예술전문학교 전임교수
2009 참신나는옷(수다공방) 기획실장



조연출 박재휘

공연
히틀러의 환생
황색여관
사랑을 이루어 드립니다
나무는 서서 죽는다
황무지
12인의 성난 사람들
만선
올모스트 메인



조연출 하태희

공연
아나키스트 단재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
What the Oedipus!
연기가 눈에 들어갈 때
Mad Rhino
그린란드 상어



조명감독 김용년

공연
뮤지컬 4.B
비밥(Bebop)
정의봉
너희는 나를 두 번 죽였다 외 다수



무대감독 김동창

연극
줄리엣과 로미오, 우리읍내,
아폴로, 전성기, 안드로이드는
전기양의 꿈을 꾸는가,
한여름 밤의 꿈, HE 외 다수



분장 김효정



분장 이은총



분장 이서연



분장 조윤진



의상 김지영



의상 김수민

참고4 배역 소개

배역 소개



배다해 유관순 役

방송
불후의 명곡, 보컬플레이, 골든12,
남자의 자격,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일

공연
모차리트 10주년 기념공연,
WE 클래식 송년 힐링콘서트,
서머 나잇 콘서트, 찬란한 콘서트 외 다수



문채영 요시코 役

방송
커피프린스 1호점, 전처가 옆방에 산다,
배드파파, 리턴, 퍼퓸,
신의 퀴즈 시즌3 외 다수

공연
이바노프, 뮤지컬 So, What?!

영화
소리꾼, 비상, 살례, 엇갈림 외 다수



이경영 공주지방법원 후카다 판사 役

방송
용의 눈물, 주몽, 연개소문, 자이언트,
대왕세종, 뉴하트, 이산, 왕과 나,
불멸의 이순신 외 다수

공연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식민지에서 온 아니키스트, 쥐덫,
더러운 손 외 다수



김유림 Vivi. K 박사 役

머슬마니아 여자 피트니스 부문 1위
맥스큐 메인 표지모델

공연
덕혜옹주, 사법살인 59 죽산 조봉암,
정의봉, 굿바디 외 다수



류재필 정춘수&편집장 役

TBC-TV 19기 공채 탤런트

공연
춘향전, 여명을 찾아서, 미스터 웅을 찾아라,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방송
순금의 땅, 징비록, 별이 되어 빛나리



김동훈 정춘영 役

공연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북어대가리
사법살인 59 죽산 조봉암, 그래도 우리는
살아간다 외 다수

영화
그대이름은 장미, 오늘 이 순간, 대결



유승일 이춘원 役

방송
싸이코지만 괜찮아, 사랑의 불시착,
비밀의 숲 시즌2, 하이바이마마 외 다수

공연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트랜스 십이야,
고기잡이 배 바다로 간 사람들,
세기의 사나이, 노부인의 방문 외 다수



윤경도 총독부법무부원 役

공연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행쇼,
프리즌
저격수와 따님, 동업, 스물셋 박문자

영화
경찰



이예린 이소제 役

공연
올모스트 메인, 미안해서 그래,
칼라일의 아침이 오기 전에
열아홉 인생, 도데의 풍차편지,
자살가게 '마틀린'
파란방아, 첫 눈이 올까요? 외 다수



김다솔 오선화 役

공연
우리읍내, 정물화, 분장실,
어느계단이야기, 8인의 여인들
집으로, 초랑동 994
우리 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
뮤지컬 헤어스프레이,
뮤지컬 TIME REP 외 다수



김동현 서기자 役

공연
세자매, 황색여관, 아트
한여름 밤의 꿈, 겟팅아웃, 황색여관,
세 자매



차예빈 비밀요원장 役

공연
벚꽃동산, 특급열차, 자전거,
봄날의 꽃, 안티고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김주미 발굴탐사요원 役

공연
그린란드 상어,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늑대와 양, 벚꽃동산, 호밀밭의 파수꾼,
종달새, 스카펭의 간계



조용석 일본장교 役

영화
경찰, 비가 그칠 때 쯤이면, 너의 마음은?

공연
십이야, 연극 성돌의 귀환,
일어나라 조국이여 석오 이동녕



오상의 미찌코 役

공연
뮤지컬 뉴시스, 시련,
문제적 인간 연산,
살아있다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유관순상 운영
	통 계 목	기타보상금(301-1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유관순 열사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며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한 여성 또는 단체 및 여고1학년 학생을 선발·격려함으로써 충절의 고장으로서 도 이미지 제고

○ 사업 위치 : 전국 일원

○ 사업 기간 : 2021.1.1. ~ 2021.12.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1,000천원(도비 100%) ※ 본예산(41,000천원) 대비 10,000천원 감액

- 감액 사유 : 2021년도는 유관순상위원회 회의 결과, 유관순상(성인 여성 또는 단체)은 '수상자 없음'으로, 유관순횃불상은 전국 여고1년생 23명을 선발함. 이에 따라, 시상금 잔액을 감액 계상함

○ 사 업 량 :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시상금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유관순상위원회(충청남도·동아일보·이화여고 공동)

○ 사업 내용 : 유관순상 및 유관순횃불상 수상자 시상금

○ 지원 근거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사업비 지원)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상금 41,000천원** ○ 제20회 유관순상 시상금 20,000천원 × 1명 = 20,000천원 ○ 제20회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1,500천원 × 14명 = 21,000천원 **(변경) ▣ 시상금 31,000천원** ○ 제20회 유관순횃불상 시상금 1,000천원 × 23명 = 23,000천원 ○ 하반기 유관순상 제도 운영 소요액(유관순상위원회, 유관순횃불모임 워크숍 등) = 8,000천원 ※ 접수인원, 20회 개최 등을 감안, 수상 인원 확대 선정(유관순상위원회 개최 결과 / '21.2월)	
총사업비	**31,000천원 (도비 1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1,000		41,000	31,000	△10,000		
국 비	0				0		
도 비	31,000		41,000	31,000	△1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1,000	41,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정낙도 (행) 4971	심성용 (행) 4983

순국열사 유관순 서거 101주기 기념 추모제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유관순상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2021년은 유관순 열사 순국 101주기가 되는 해이며, '19년 열사의 건국훈장이 1등급으로 격상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열사의 애국·애족정신이 높이 평가되고 있음
- 유 열사의 유적지에서 독립운동 정신을 추모하며 순국선열의 얼과 정신을 계승하는 계기 마련

○ 사업 위치 : 유관순열사 사적지, 유관순생가 앞(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유관순생가길 18-1)

○ 사업 기간 : 2021년 9월 ~ 12월

○ 예 산 액 : 20,000천원(도비 10,000, 시비 10,000)

○ 사 업 량 : 유관순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추모제(공연) 1식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유관순 열사 서거 101주년 기념 추모공연(초혼묘에 핀 불꽃)

- 헌다례, 관현악과 판소리, 한국무용과 퍼포먼스의 협연

○ 지원 근거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

> **유관순상 운영 및 지원 조례 제9조(사업비 지원)**
> 충청남도지사는 유관순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편성하고 집행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인건비 10,000 ○ (연습 및 출연) 연출, 안무비, 안무지도비, 무용수, 사회, 판소리, 악사, 헌다례 : 9,400 ○ (운영 스텝) 총괄 진행, 진행 안전요원 : 400 ○ (운반비) : 200 ▣ 제작비 6,000 ○ (소품비) 지전, 연꽃, 국화꽃 생화 및 조화 : 1,000 ○ (재료비) 헌다례 재료비(차, 향, 다식) : 600 ○ (의상비) 각종 의상비 : 2,400 ○ (임차료) 음향시설 : 2,000 ▣ 홍보비 4,000 ○ (홍보비) 현수막, 리플릿, 배너, 디자인 : 2,400 ○ (기록비) 영상녹화 및 DVD영상제작, 사진 촬영 : 1,600	
총사업비	**20,000천원 (도비 10,000, 시비 1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000	0	0	20,000	20,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		0	10,000	10,000		
시군비	10,000		0	10,000	10,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정낙도 (행) 4971	심성용 (행) 4983

참고 **순국열사 유관순 서거 101주기 추모사업 관련**



유관순열사 초혼묘(천안시 병천면 매봉산)

◈ 헌향 - 백년의 기다림 못다 핀 꿈

흠향 (歆香), 제의의 춤



지전춤



판소리



관현악단

- 관현악(대금, 아쟁, 장단)과 구음 상여소리로 공연 시작을 알린다
- 제의 시작하는 첫 번째 의례 흠향
  : 쑥을 태운 향로를 입구부터 묘 앞까지 걸어오며 판을 정화
- 축문 넋을 위로하는 시낭송
- 저승의 영혼이 이승에서 풀지 못한 원한을 풀어주는 지전춤

◈ 헌다 - 한국 차 문화협회 충남지부 회원들의 헌다례





- 악과 소리 : 대금 산조 , 아쟁 산조
- 유관순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차를 올리는 의식으로 정성과 존경을 표하는 예절

◈ 헌화 - 연꽃을 이용한 헌화무





- 다례 후 연결되는 무용수들의 헌화무
- 평화를 염원하며 바치는 시민들의 헌화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양성평등 촉진
	세부사업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통 계 목	출연금(306-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정 전반에 대한 양성평등 관점에서의 정책추진 견인과 여성의 지역사회 역량 강화, 충남 양성평등비전 2030 실행 등 우리 도 양성평등 사업의 확대 기반 구축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여성정책개발원(공주시 반포면 계룡대로 1283)

○ 사업 기간 : 2021. 1.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999,506천원**(도비 1,999,506)

※ 증감 사유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하고자 함.

○ 사 업 량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 1식

○ 사업시행방법 : 직접 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사업 내용 : 여성평등·가족 관련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교육 및 네트워크 사업 등 추진

○ 지원 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운영지원 조례」 제5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충청남도 여성정책개발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5조(육성지원) ①충청남도는 여성개발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여성정책개발원 운영비 1,643,070 ▣ 연구사업비 410,000 ▣ 순세계잉여금 △53,564 ※ 원가산출내역서(총괄표) 및 사업별 산출내역 설명서 별첨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99,506	0	2,053,070	1,999,506	△53,564	0	
국 비	0				0		
도 비	1,999,506		2,053,070	1,999,506	△53,564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78,984	1,779,405	199,579	89.9%	199,57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 결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2020.9.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여성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정낙도 (행) 4971	서가영 (행) 4982

참 고 1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출연금 원가산출내역서(총괄) 〉

(단위 : 천원)

구 분		요구액	산 출 기 초	비고 (전년대비 증감)
합 계		1,999,506	본 예 산 대 비 : △53,564	
행정운영경비	소 계	1,643,070		0
	인건비	1,438,440	○ 기본급 1,102,900(26명 × 평균 인건비 42,419 = 1,102,900) ○ 수당 198,940 ※시간외수당, 정액급식비 등 제수당 ○ 퇴직충당금 136,600(≒1,301,840천원 × 10.5%)	
	경상이전	204,630	○ 포상금(성과상여금, 다급 기준) 79,110 ○ 연금부담금 125,520(4대보험; 1,301,840천원 × 약 9.6%)	
연구사업	소 계	410,000		0
	기본연구사업비	242,500	○ 여성 노동 · 일자리 분야 연구 19,500 ○ (여성)젠더폭력 등 인권 분야 연구 19,000 ○ 특정성별영향평가, 성주류화 제도화 관련 연구 19,500 ○ 남성 양성평등인식 실태 연구 50,000 ○ 가족 · 다문화 분야 관련 연구 38,500 ○ 돌봄, 보육, 일 · 생활 균형 연구 39,000 ○ 2020년도 정책 연구과제 수행 30,000(3,000 × 10개 과제) ○ 현안과제 수행(道 과제) 12,000(1,000 × 12개 과제) ○ 연구과제 외부평가 15,000(200 × 25명 × 3회)	
	교육사업비	87,000	○ 찾아가는 여성 풀뿌리 자치학교 12,000(강사비, 자료제작 등) ○ 여성 소모임 인큐베이팅 START-UP 24,000 ○ 작은연구 STUDY-UP 12,000 ○ 성평등 강사단 및 충남교사 양성평등 역량강화 5,500 ○ 젠더아카데미(도민, 여성단체, 이장단, 경찰) 8,000 ○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단 전문역량 교육 2,500 ○ 충남 성평등 모니터링단 MOVE-UP 16,000 ○ 충남 성별영향평가 컨설턴트 양성과정(신규) 7,000	
	연구조성사업비	80,500	○ 개원기념 세미나, 젠더포럼 7,000(수당, 자료집 등) ○ 젠더브리프, 연구과제브리프 발간 17,000 ○ 국내외 협약기관과의 교류협력, 정책현장네트워크사업 10,000 ○ 교육사업기획위원회, 홍보자문단 운영 3,500 ○ 도 시군 유관부서 정책협의체, 간담회 운영 2,000 ○ 충남인, 여성인 소식지, 뉴스레터 등 홍보물 발간 23,500 ○ 충남 성평등모니터링 기획 네트워킹 2,000 ○ 충남 성평등교육 기획 네트워킹(신규) 2,000 ○ 교육참여자 이력관리 시스템 운영 및 교육자료 구입 1,000 ○ 연구원 워크숍, 콜로키움 운영, 학술지게재지원 등 7,500 ○ SNS 서포터즈단 운영 5,000	
잉여금	소 계	△53,564		△53,564
	순세계잉여금	△53,564	○ 2020년 순세계 잉여금 ; 53,564	△53,564

참 고 2

〈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 2020년도 결산 내역 〉

1 세입예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수 입 액	수입증감액	비율(%)
합 계	2,962,611,000	2,960,630,572	△1,980,428	99.9
시설사용료수입	500,000	0	△500,000	0
사 업 수 입	216,810,000	216,743,050	△66,950	100
이 자 수 입	3,000,000	2,271,437	△728,563	75.7
이자소득환급금	17,075,000	17,074,140	△860	100
그 외 수 입	5,226,000	4,236,424	△989,576	81.1
운 영 보 조 금	1,978,984,000	1,978,984,000	0	100
위탁사업보조금	410,000,000	410,000,000	0	100
순세계잉여금	274,086,000	274,085,279	△721	100
특별회계전입금	56,930,000	57,236,242	306,242	100.5

2 세출예산 현황

(단위 : 원)

구 분	예 산 액	집 행 액	미 집 행 액	비율(%)
합 계	2,962,611,000	2,607,067,210	355,543,790	88.0
행정운영경비	1,999,161,000	1,645,180,000	353,981,000	82.3
연 구 사 업 비	963,450,000	961,887,210	1,562,790	99.8

3 세입·세출 수지결산

(단위 : 원)

수 입	지 출	잔 액
2,960,630,572	2,607,067,210	353,563,362

※ (참고) 2021년도 본예산에 기 편성된 순세계잉여금 : 300,000,000원

새일센터 지정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의 취업지원 서비스 지원으로 경제활동율 제고

○ 사업 위치 : 10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홍성)

＊ 미개소 5개시군(계룡, 금산, 청양, 예산, 태안)은 지역여성인적자원개발 사업운영(직업교육훈련 등 경단여성 취업지원)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819,767천원**(국비 3,265,013, 도비 554,754)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직업교육훈련 선정 심사 완료에 따른 예산 변동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0개 시군

○ 사업 내용 :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통한 취업상담, 직업교육훈련, 인턴 및 취업 후 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새일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비 : 1,034,000천원 ○ 새일여성인턴십 : 1,269,200천원 ○ 새일센터운영비 : 2,194,980천원 ·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1,631,616천원 ·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 291,000천원 · 경력단절예방 사업비 : 55,200천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 55,200천원 · 성과운영비 : 161,964천원 (변경) ▣ 새일센터 지정운영 ○ 직업교육훈련비 : 535,981천원(△498,019) ○ 새일여성인턴십 : 1,645,400천원(증376,200) ○ 새일여성인턴십(추경) : 240,000천원(증240,000) ○ 새일센터운영비 : 2,425,274천원(증230,294) ·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1,813,874천원(증182,258)	

	·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 253,000천원(△38,000) · 경력단절예방 사업비 : 171,400천원(증116,200) · 비정규직 처우개선 : 55,200천원 · 성과운영비 : 131,800천원(△30,164) ○ 새일센터운영비(추경) : 16,150천원(증16,150)	
총사업비	4,862,805천원(국비 3,265,013, 도비 554,754, 시군비 1,043,038)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862,805	0	4,498,180	4,862,805	364,625	0	
국 비	3,265,013		3,146,850	3,265,013	118,163		
도 비	554,754		456,167	554,754	98,587		
시군비	1,043,038		895,163	1,043,038	147,875		

* 보조율 : 국비66%, 도비15% 시군비2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603,017	3,603,017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팀	이순종 (행) 2040	박일순 (행) 4972	장정화 (행) 4995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새일센터 지정운영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308-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촉진을 위한 광역센터의 운영·지원

○ 사업 위치 : 예산군 삽교읍 예학로 10-22, 7층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67,708천원**(국비 233,854, 도비 233,854)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사 업 량 : 광역센터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민간수행(출연기관 위탁)

○ 사업시행주체 : 충남일자리진흥원

○ 사업 내용 : 지역 내 새일센터 역량을 강화하고, 일자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지원하여 새일센터 운영의 효율성 제고하는 광역 기능 수행

○ 지원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203,952천원 ○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 68,800천원 ○ 경력단절예방 사업비 : 100,000천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 19,320천원 (변경) ▣ 광역새일센터 지정운영 ○ 취업상담사 인건비 및 활동경비(4대보험 기관부담금 포함) : 279,588천원(증75,636) ○ 사업관리비 및 사후관리 사업비 : 68,800천원 ○ 경력단절예방 사업비 : 100,000천원 ○ 비정규직 처우개선 : 19,320천원	
총사업비	467,708천원(국비233,854, 도비233,85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67,708	0	392,072	467,708	75,636	0	
국 비	233,854		196,036	233,854	37,818		
도 비	233,854		196,036	233,854	37,818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84,870	384,87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팀	이순종 (행) 2040	박일순 (행) 4972	장정화 (행) 4995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사회참여 확대
	세부사업	경력단절여성취업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경력단절여성의 근로의욕 고취 및 구직능력 향상

○ 사업 위치 : 3개 시군(서산, 당진, 부여 / 시군 직영 새일센터)

＊ 민간운영 새일센터(7개소)는 고용노동부에서 직접 교부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76,968천원(국비 176,968)

※ 증감 사유 :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 사 업 량 : 3개소(시군 직영 새일센터)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군(서산, 당진, 부여)

○ 사업 내용 : 집단상담프로그램 운영 및 취업알선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13조(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지정)

①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경제활동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단위의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직업상담사 2인 84,274 x 1개소 = 84,274 · 직업상담사 1인 42,137 x 2개소 = 84,274 (변경) ▣ 직업상담사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일반형 2인 90,050 x 1개소 = 90,050(증5,776) · 일반형 1인 43,459 x 2개소 = 86,918(증2,644)	
총사업비	176,968천원(국비 176,968)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6,968	0	168,548	176,968	8,420	0	
국 비	176,968		168,548	176,968	8,420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209,485	209,485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양성평등팀	이순종 (행) 2040	박일순 (행) 4972	장정화 (행) 4995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시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도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대비 처우가 열약한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의 처우를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시군 직영 및 운영비 미지원 시설 종사자 제외)

○ 사업 기간 : '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85,946천원**(도비 485,946)

※ 증감 사유 : 2020년 대비 도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확대 개편(10호봉제→18호봉제)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31개소 155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1개 시군(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제외)

○ 사업 내용 : 여성가족부 인건비 지원기준과 도 자체 인건비 가이드라인 간 인건비 차액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여성권익증진 시설종사자 인건비추가 지원(시군) : 943,538천원(도283,061, 시군660,477)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시군) : 943,538천원(도283,061, 시군660,477) · 154명×510.67천원×12개월=943,538천원 (변경)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시군) : 1,691,830천원(도485,946, 시군1,133,884)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시군) : 1,691,830천원(도485,946, 시군1,133,884) · 155명×909.59천원×12개월≒1,691,830천원 *월 평균액 909.59천원으로 종사자별 실 지급액과는 차이가 있음.	
총사업비	1,619,830천원(도비 485,946 시군비 1,133,88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19,830	0	943,538	1,619,830	676,292	0	계속
국 비	0	0	0	0	0	0	
도 비	485,946	0	283,061	485,946	202,885	0	
시군비	1,133,884	0	660,477	1,133,884	473,407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94,259	194,259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통 계 목	민간경상사업보조 (307-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공주시(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 사업　　기간 : '21. 7.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700천원**

※ 증감 사유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19명

○ 사업시행방법 :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 사업　　내용 : 여성긴급전화1366충남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도) : 5,700천원(도5,700)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도) : 5,700천원(도5,700) · 19명×50천원×6개월=5,700천원	
총사업비	5,700천원(도비 5,7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700	0	0	5,700	5,7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5,700	0	0	5,700	5,7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 도비 100%, 시군비 -%, 기타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시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등 11개 시군(*시군 직영 및 운영비 미지원 시설 종사자 제외)

○ 사업 기간 : '21. 7. 1. ~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130천원

※ 증감 사유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31개소 157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등 11개 시군(계룡시, 당진시, 부여군, 서천군 제외)

○ 사업 내용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시군) : 47,100천원(도14,130, 시군32,970) ○ 여성권익증진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시군) : 47,100천원(도14,130, 시군32,970) · 157명×50천원×6개월=47,100천원	
총사업비	47,100천원(도비 14,130 시군비 32,97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7,100	0	0	47,100	47,1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4,130	0	0	14,130	14,130	0	
시군비	32,970	0	0	32,970	32,97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 도비 30%, 시군비 70%, 기타 -%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가정·성폭력상담소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및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및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국비 미지원 상담소에 대한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으로 피해자 보호 및 권익신장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천안, 금산, 청양, 홍성, 예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13,844천원**(도비 113,844)

※ 증감 사유 : 여가부 '21년 상담소 지원기준액 반영하여 지원예산 유보액 감액

○ 사 업 량 : 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

○ 사업 내용 : 국비 미지원 상담소의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홍보비, 관리비 등) 지원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제5조 제1, 2항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제26조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620,506천원 ○ 가정폭력 상담소 126,382천원 × 3개소 = 379,146천원 ○ 성폭력 상담소 123,817천원 × 1개소 = 123,817천원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성폭력만 국비지원) 66,263천원* × 1개소 = 66,263천원 * 통합상담소 운영기준액 190,080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기준액 123,817 ○ 유보액 : 51,280천원	

	(변경)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569,226천원 (※ 유보액 전액 감액) ○ 가정폭력 상담소 126,382천원 × 3개소 = 379,146천원 ○ 성폭력 상담소 123,817천원 × 1개소 = 123,817천원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성폭력만 국비지원) 66,263천원* × 1개소 = 66,263천원 * 통합상담소 운영기준액 190,080 = 성폭력상담소 운영비기준액 123,817	
총사업비	569,226천원(도비 113,844 시군비 455,38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69,226	0	569,226	569,226	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113,844		165,124	113,844	-51,280		
시군비	455,382		404,102	455,382	51,28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0,082	110.082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이 순 종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및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및예방
	세부사업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사업 위치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신규사업)

○ 예 산 액 : **84,000천원**(국비 42,000, 도비 42,000)

※ 증감 사유 : 여가부 '21년 신규 공모사업 최종선정('20. 12월)에 따른 지원 예산액 편성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 사업 내용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 84,000천원 ○ 전문인력(2인) 인건비 : 54,000천원 - 전문인력 인건비 27,000천원 × 2인 = 54,000천원 ○ 운영비 : 10,000천원 - 회의비, 여비, 수용비 등 ○ 사업비 : 20,000천원 - 피해자 심리치료 및 치유회복 프로그램 등	
총사업비	84,000천원(국비 42,000 도비 42,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4,000	0	0	84,000	84,000	0	신규
국 비	42,000		0	42,000	42,000		국고
도 비	42,000		0	42,000	42,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이 순 종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및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및예방
	세부사업	디지털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한 디지털 성폭력 피해자 '접수부터 사후관리까지' 원스톱 종합서비스 지원

○ 사업 위치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충남 공주시 무령로 592)

○ 사업 기간 : 2021.1.1.~2021.12.31.(일몰사업)

○ 예 산 액 : 0천원

※ 증감 사유 : 해당사업 계획 및 내용으로 여가부 '21년 신규 공모사업(특화프로그램 지원) 최종 선정 및 국비 확보로 사업 대체에 따른 전액 삭감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여성긴급전화 1366충남센터

○ 사업 내용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제10조(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 ① 도지사는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해 충청남도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원스톱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성범죄 방지 및 피해지원 등을 위하여 활동하는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 80,000천원 ○ 디지털 성폭력 대응 전문인력(2명) 인건비 : 57,400천원 - 전문인력 28,700천원* × 2명 = 57,400천원 * '21년 1366센터 상담원 인건비 지원기준액 반영 ○ 디지털 성폭력 대응통합지원센터 운영비 : 22,600천원 (변경) ▣ 디지털 성폭력 대응 통합지원센터 운영 : 0천원	
총사업비	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80,000	0	-80,000	0	일몰
국 비	0				0		
도 비	0		80,000	0	-80,00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이 순 종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서비스 지원을 통한 피해자 보호 및 권익신장 도모

○ 사업 위치 : 시군 (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논산, 당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21,471천원**(국비 680,981, 도비 340,490)

※ 증감 사유 : 상담소 1개소(천안) '21년 여가부 종사자 1인 추가배치 신규 선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8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수행

○ 사업시행주체 : 7개 시군

○ 사업 내용 : 가정폭력상담소(통합상담소 포함)의 인건비 및 운영비(사업비, 홍보비, 관리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및 제5조 1, 2항

> **제4조(국가 등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과 제7조제2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와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대하여 경비를 보조하는 등 이를 육성·지원하여야 한다.
> **제5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 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1,341,115천원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지원기준액) 190,080천원 × 3개소 = 570,240천원 ○ 가정폭력 상담소(지원기준액) 126,382천원 × 5개소 = 631,910천원 ○ 상담원 1인 추가배치 인건비 27,793천원 × 5개소 = 138,965천원 (변경) ▣ 가정폭력 상담소 운영 지원 : 1,361,960천원 ○ 가정·성폭력 통합상담소(지원기준액) 190,080천원 × 3개소 = 570,240천원 ○ 가정폭력 상담소(지원기준액) 126,382천원 × 5개소 = 631,910천원 ○ 상담원 1인 추가배치 인건비 27,793천원 × 5개소 = 138,965천원 ○ '21년 상담원 1인 추가배치 인건비(9개월분 / '21. 4월 ~) 20,845 × 1개소 = 20,845천원	
총사업비	1,361,960천원(국비 680,981 도비 340,490 시군비 340,489)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61,960	0	1,341,115	1,361,960	20,845	0	계속
국 비	680,981		670,558	680,981	10,423		기금
도 비	340,490		335,279	340,490	5,211		
시군비	340,489		335,278	340,489	5,211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68,123	968,123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이 순 종 (행) 2040	김 인 기 (행) 4973	정 찬 호 (행) 4988

성폭력상담소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상담소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피해자 대한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의료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6개 시군(천안, 공주, 아산, 예산, 홍성, 태안)

○ 사업 기간 : 2021.01.01. ~ 2021.12.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94,801천원**(국비 596,,534 도비 298,267)

※ 감액 사유 : 여가부 변경내시 반영

○ 사 업 량 : 9개소(천안3, 공주1, 아산2, 홍성1, 예산1, 태안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폭력상담소

○ 사업 내용 : 성폭력 상담소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6조

제10조(상담소의 설치·운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상담소(이하 "상담소"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상담소를 설치·운영하려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12.18.>
③ 상담소의 설치·운영 기준, 상담소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및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1,193,082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일 반 상담소 : 123,818×7개소 = 866,726천원 - 장애인 상담소 : 163,178천원×2개소 = 326,356천원 (변경) ▣ 성폭력상담소 운영 지원(1,193,068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일 반 상담소 : 123,816×7개소 = 866,712천원 - 장애인 상담소 : 163,178천원×2개소 = 326,356천원	
총사업비	1,193,068천원(국비 596,534 도비 298,267 시군비 298,26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193,068	0	1,193,082	1,193,068	-14	0	계속
국 비	596,534		596,541	596,534	-7		기금
도 비	298,267		298,270	298,267	-3		
시군비	298,267		298,271	298,267	-4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65,546	865,546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 4993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비수급생계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 중 시설수급자가 아닌 비수급자에 대한 생계비 지원으로 생활안정 도모

○ 사업 위치 : 1개 시군(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627천원(국비 8,627)

※ 증액 사유 : 여가부 변경내시 반영

○ 사 업 량 : 1개소(비공개시설)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 사업 내용 : 장애인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생계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보호비용을 보호시설의 장 또는 피해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자등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하지 아니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3. 아동양육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수급생계비) : 8,522천원(1개소) (변경) ▣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비수급생계비) : 8,627천원(1개소)	
총사업비	8,627천원(국비 8,62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8,627	0	8,522	8,627	105	0	계속
국 비	8,627		8,522	8,627	105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522	8,522	0	100%		

(단위 : 천원,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실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4993

해바라기센터 운영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307-10)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피해자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전문적인 상담서비스 제공, 심리치료, 의료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427,823천원**(국비 299,476 도비 128,347)

※ 감액 사유 : 여가부 변경내시 반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3자 공동운영(충남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해바라기센터 운영비 및 인건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26조(경비의 보조)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상담소, 보호시설 또는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경비를 보조할 때에는 제4조에 따른 성폭력 실태조사와 제25조에 따른 평가 및 제32조에 따른 보고 등의 결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488,429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488,429천원×1개소 = 488,429천원 (변경) ▣ 해바라기센터 운영지원(427,823천원) ○ 인건비 및 운영비 : 427,823천원×1개소 = 427,823천원	
총사업비	427,823천원(국비 299,476 도비 128,347)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7,823	0	488,429	427,823	-60,606	0	계속
국 비	299,476		341,900	299,476	-42,424		기금
도 비	128,347		146,529	128,347	-18,182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61,548	461,548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 4993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해바라기센터운영지원
	통 계 목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402-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해바라기센터의 통합형 전환사업을 통해 체계적인 피해자 지원환경을 갖춰 피해자의 인권보호 및 2차 피해방지에 기여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33,768천원**(국비 16,884 도비16,884)

※ 증액 사유 : 통합형 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 보수 및 기자재 구입(여가부 변경내시 반영)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6조

제18조(피해자를 위한 통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 피해상담, 치료,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기관에 법률상담등 연계, 수사지원, 그 밖에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하여금 통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통합지원센터에 두는 상담원 등 종사자의 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해바라기센터 기능보강 : 33,768천원 (※ 1회 추경 신규 편성) ○ 통합형기능 전환에 따른 시설 보수 및 기자재 구입 - 회의실 : 3,750천원(빔프로젝트, 수강용 테이블, 의자) - 로비 : 1,930천원(벽면루바붙임, 벽걸이형 TV 등) - 산부인과 진료실 : 1,077천원(상부장 설치, 냉장고, 전자레인지) - 심리치료실 : 450천원(치료용 의자 3개) - 상담실 및 진료실 : 19,567천원(방음시설, 진술녹화장비, 소파형 의자 및 원형테이블, 공기청정기, 컴퓨터, 냉장고 등) - 기타경비 : 6,994천원(노무비, 부가가치세 등)	
총사업비	33,768천원(국비16,884 도비 16,884)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0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3,768	0	0	33,768	33,768	0	신규
국 비	16,884		0	16,884	16,884		기금
도 비	16,884		0	16,884	16,884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28,000	328,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 4993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해바라기센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지원(도)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 범죄로 인한 심리치료, 의료비, 간병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구성원 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동남구 망향로 201(단국대학교병원 內 소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1,149천원**(국비 56,804 도비 24,345)

※ 감액 사유 : '21년 예상 수요액 반영하여 시설 간 의료비 지원액 조정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3자 공동운영(충남도, 단국대병원, 충남지방경찰청)

○ 사업시행주체 : 충남해바라기센터

○ 사업 내용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100,309천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100,309천원×1개소 = 100,309천원 (변경)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81,149천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81,149천원×1개소 = 81,149천원	
총사업비	81,149천원(국비 56,804 도비 24,345)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81,149	0	100,309	81,149	-19,160	0	계속
국 비	56,804		70,216	56,804	**-13,412**		기금
도 비	24,345		30,093	24,345	**-5,748**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0,000**	90,0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실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4993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지원 (시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지원(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성폭력피해자 대한 전문적인(전문의) 심리치료, 의료비, 간병비 제공으로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신속한 복귀 지원

○ 사업 위치 : 8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홍성, 예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286천원(국비 13,412, 도비 2,874)

※ 증액 사유 : '21년 예상 수요액 반영하여 시설 간 의료비 지원액 조정

○ 사 업 량 : 8개 시군(천안, 공주, 보령, 아산, 서산, 부여, 홍성, 예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성폭력상담소 및 전담의료기관

○ 사업 내용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

○ 지원근거 :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의료비 지원)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27조제2항에 따른 치료 등 의료 지원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용의 지원범위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15,160천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7개소 (변경) ▣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간병비 지원(19,160천원) ○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지원 : 8개소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추경(B)	증감(A-B)		
계	19,160	0	15,160	19,160	4,000	0	계속
국 비	13,412		10,612	13,412	2,800		기금
도 비	2,874		2,274	2,874	600		
시군비	2,874		2,274	2,874	60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191	11,191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실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실	-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최수희 (행)4993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 대한 전문적 상담 및 지원 서비스를 통한 인권보호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215,217천원**(국비 143,478, 도비 71,739)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감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한국어 및 통역 상담 등 지원 서비스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288,100천원(기144,050, 도72,025, 시군72,025)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288,100천원(기144,050, 도72,025, 시군72,025) · 인건비 : 5명×3,720천원×12개월≒223,212천원 · 운영비 : 1개소×2,500천원×12개월=30,000천원 · 사업비 : 34,888천원(통·번영비, 의료비, 홍보비 등) (변경)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286,956천원(기143,478, 도71,739, 시군71,739) ○ 폭력피해 이주여성 상담소 운영 : 286,956천원(기143,478, 도71,739, 시군71,739) · 인건비 : 5명×3,701천원×12개월≒222,068천원 · 운영비 : 1개소×2,500천원×12개월=30,000천원 · 사업비 : 34,888천원(통·번영비, 의료비, 홍보비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86,956	0	288,100	286,956	-1,144	0	계속
국 비	143,478	0	144,050	143,478	-572	0	기금
도 비	71,739	0	72,025	71,739	-286	0	
시군비	71,739	0	72,025	71,739	-286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25%, 시군비 2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11,032	211,032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쉼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 대한 보호 서비스를 통한 인권보호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65,593천원**(국비 136,371, 도비 29,222)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숙식제공, 상담, 의료, 법률, 출국, 학습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 194,512천원(기136,158, 도29,177, 시군29,177)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 194,512천원(기136,158, 도29,177, 시군29,177) · 인건비 : 5명×2,393,3천원×12개월≒143,597천원 · 운영비 : 1개소×909.6천원×12개월≒10,915천원 · 사업비 : 40,000천원(긴급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 (변경)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 194,815천원(기136,371, 도29,222, 시군29,222)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쉼터) : 194,815천원(기136,371, 도29,222, 시군29,222) · 인건비 : 5명×2,398.3천원×12개월≒143,900천원 · 운영비 : 1개소×909.6천원×12개월≒10,915천원 · 사업비 : 40,000천원(긴급지원, 치료·회복 프로그램비 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94,815	0	194,512	194,815	303	0	계속
국 비	136,371	0	136,158	136,371	213	0	기금
도 비	29,222	0	29,177	29,222	45	0	
시군비	29,222	0	29,177	29,222	45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836	160,836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지원(그룹홈)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에 대한 주거지원을 통한 자립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85,577천원**(국비 70,475, 도비 15,102)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아동에 대한 주거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폭력피해 이주여성 쉼터 운영비 지원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 100,582천원(기70,408, 도15,087, 시군15,087)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 100,582천원(기70,408, 도15,087, 시군15,087) · 인건비 : 3명×2,279천원×12개월≒82,042천원 · 운영비 : 1개소×1,545천원×12개월=18,540천원 (변경)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 100,680천원(기70,475, 도15,102, 시군15,103)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그룹홈) : 100,680천원(기70,745, 도15,102, 시군15,103) · 인건비 : 3명×2,281.7천원×12개월≒82,140천원 · 운영비 : 1개소×1,545천원×12개월=18,5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0,680	0	100,582	100,680	98	0	계속
국 비	70,475	0	70,408	70,475	67	0	기금
도 비	15,102	0	15,087	15,102	15	0	
시군비	15,103	0	15,087	15,103	16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836	160,836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여성인권보호 및 예방
	세부사업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을 통한 피해자 및 동반아동 주거환경 개선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1. 1. 1. ~ 12. 31.(단년도 계속사업)

○ 예 산 액 : **10,200천원**(국비 8,400, 도비 1,800)

※ 증감 사유 : 본예산 편성 후 여성가족부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증액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 지원근거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 또는 제7조제2항에 따른 상담소나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보호시설이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설비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그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폭력피해 이주여성 안전보강(자본보조) : 10,000천원(기7,000, 도1,500, 시군1,500) ○ 폭력피해 이주여성 안전보강(자본보조) : 10,000천원(기7,000, 도1,500, 시군1,500) · 쉼터 기자재 및 개보수 5,000천원 · 그룹홈 기자재 및 개보수 5,000천원 (변경)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 12,000천원(기8,400, 도1,800, 시군1,800) ○ 폭력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안전보강 : 12,000천원(기8,400, 도1,800, 시군1,800) · 쉼터 기자재 및 개보수 6,300천원 · 그룹홈 기자재 및 개보수 5,7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0	10,000	12,000	2,000	0	계속
국 비	8,400	0	7,000	8,400	1,400	0	기금
도 비	1,800	0	1,500	1,800	300	0	
시군비	1,800	0	1,500	1,800	30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15%, 시군비 1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9,350	9,35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권익보호팀	이순종 (행) 2040	김인기 (행) 4973	김효환 (행) 204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주거안정과 입소자의 건강한 자녀 양육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계룡, 서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61,377천원**(도비 261,377)

※ 증감 사유 : 2021년 7월부터 주52시간 근무제 확대 실시(5인 이상 근로자 사업장)에 따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종사자 2명 인건비 증액(미혼모자가족(기본)복지시설 종사자 2명 증원)

○ 사 업 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천안 2, 계룡 1, 서천 1)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장·군수(천안, 계룡, 서천)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 지원 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호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 1,273,800천원** ○ 모자가족 기본시설(세화주택) = 226,200천원(인건비 209,253, 운영비 16,947) ○ 모자가족 기본시설(에벤에셀모자원) = 316,000천원(인건비 272,686, 운영비 43,314) ○ 미혼모자 공동시설(새소망의집) = 287,270천원(인건비 161,282천원, 운영비 125,988) ○ 미혼모자 기본시설(구세군아름드리) = 444,330천원(인건비 390,521, 운영비 53,809) (변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운영 지원 : 1,306,883천원** ○ 모자가족 기본시설(세화주택) = 226,200천원(인건비 209,253, 운영비 16,947) ○ 모자가족 기본시설(에벤에셀모자원) = 316,000천원(인건비 272,686, 운영비 43,314) ○ 미혼모자 공동시설(새소망의집) = 287,270천원(인건비 161,282, 운영비 125,988) ○ 미혼모자 기본시설(구세군아름드리) = 477,413천원(인건비 423,604, 운영비 53,809) (인건비 증액분) - 기본급 2명 × 1,991,500원(사회복지사 3호봉 기준) × 6개월 = 23,898천원 - 수당(명절휴가비, 시간외수당, 가족수당 등) 2명 × 365,420원 × 6개월 = 4,385천원 - 보험금(퇴직적립금, 사회보험부담금) 2명 × 400,000원 × 6개월 = 4,800천원 ※ 인건비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 운영비는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지침)에 따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306,883		1,273,800	1,306,883	33,083		
국 비							
도 비	261,377		254,760	261,377	6,617		
시군비	1,045,506		1,019,040	1,045,506	26,466		
기 타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8,160	248,16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기거 후 퇴소하는 세대에 자립준비정착금 지원으로 자립도모

○ 사업 위치 : 3개 시군(천안, 계룡, 서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00천원**(도비 4,800)

※ 증감 사유 : 2021년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 예정 가구 증가(5가구→8가구)에 따른 자립정착금 증액

○ 사 업 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3개소(천안 1, 계룡 1, 서천 1) 8가구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장·군수(천안, 계룡, 서천)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2년 기거후 퇴소하는 가구에 자립정착금 가구당 3,000천원 지원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15,000천원 ○ 5세대 × 3,000천원 = 15,000천원 (변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퇴소자 자립정착금 : 24,000천원 ○ 8세대 × 3,000천원 = 24,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000		15,000	24,000	9,000		
국 비							
도 비	4,800		3,000	4,800	1,800		
시군비	19,200		12,000	19,200	7,2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000	3,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보조학습비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모자가족복지시설 입소가정 자녀의 학습비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 경감 및 교육기회 확대

○ 사업 위치 : 2개 시군(계룡, 서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400천원**(도비 2,400)

※ 증감 사유 : 코로나19 등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모자가족시설 입소자 증가

○ 사 업 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2개소 24명(초·중·고등학생 자녀 양육 모자가정)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장·군수(계룡, 서천)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초·중·고생의 인터넷학습기관 및 사설학원 등록비 지원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 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5조(비용의 보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부모가족복지사업에 드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제18조(비용의 부담)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설치하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그 비용의 100분의 80이상을 부담한다.

충청남도 한부모가족지원 조례 제6조(지원대상)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의 생활안정 및 자립역량 강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2. 법 제19조에 따른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서 보호를 받는 사람과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 10,000천원 ○ 20명(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 × 500천원 = 10,000천원 (변경)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자녀학습보조비 : 12,000천원 ○ 24명(모자가족복지시설 2개소) × 500천원 = 12,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000		10,000	12,000	2,000		
국 비							
도 비	2,400		2,000	2,400	400		
시군비	9,600		8,000	9,600	1,6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20%, 시군비 8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360	3,36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계룡시, 서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20천원(도비 1,620)

※ 증감 사유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위해 한부모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4개소 1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3개 시장·군수(천안, 계룡, 서천)

○ 사업 내용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 5,400천원(도 1,620, 시군 3,780) ○ 18명 × 50,000원 × 6개월 = 5,4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400	0	0	5,400	5,4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620	0	0	1,620	1,620	0	
시군비	3,780	0	0	3,780	3,78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한부모가족자녀 양육비 등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아동양육비, 아동교육지원비 등 지원을 통한 생활안정 및 자립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345,000천원**(국비 13,640,000, 도비 1,705,000)

※ 증감 사유 : 2021년 5월부터 생계급여 수급자 아동양육비 지원(월 10만원), 만 25~34세 청년한부모 추가양육비지원(월 5~10만원) 정부 정책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2020.12.11.) 반영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기준 중위소득 52% 이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복지급여 지급

- 아동양육비(월 20만원), 추가아동양육비(월 5~10만원), 학용품비(연 8.3만원), 생활보조금(월 5만원)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및 제2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2조(복지급여의 내용) [시행 2021. 4. 21.]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에 따른 복지 급여의 신청이 있으면 다음 각 호의 복지 급여를 실시 하여야 한다.

1. 생계비 2. 아동교육지원비 4. 아동양육비

②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급여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는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제4호의 아동양육비를 지급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복지 급여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모 또는 부의 직계존속이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미혼모나 미혼부가 5세 이하의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2. 3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 14,754,200천원 ○ 아동양육비(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14,670,200천원 (월평균 6,100여명)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1인당 연 5.41만원) : 21,600천원 (약 400명) ○ 생계비(시설입소자 월 5만원): 2,400천원 (연평균 30가구) ○ 추가양육비 (만25세이상 미혼한부모와 조손가족의 만5세 이하 자녀 1인당 월5만원) : 60,000천원(월평균 100명) (변경) ▣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 17,050,000천원 ○ 아동양육비 : 16,788,400천원 - 만18세 미만 아동 1인당 월 20만원 : 14,880,000천원 (월평균 6,200여명) - 생계급여 수급자 아동 1인당 월 10만원 : 1,908,400천원 (월평균 1,600여명)	

	○ 중고등학생 학용품비(1인당 연 8.3만원) : 33,200천원 (약 400명) ○ 생계비(시설입소자 월 5만원): 2,400천원 (연평균 30가구) ○ 추가양육비 : 226,000천원 (월평균 800명) - 조손가족 및 만 35세 이상 미혼 한부모 만 5세 이하 아동 1인당 월5만원 - 만25세~34세 이하 청년 한부모 1인당 만5세 이하 10만원, 만6~18세 미만 5만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050,000		14,754,200	17,050,000	2,295,800		
국 비	13,640,000		11,803,360	13,640,000	1,836,640		기금
도 비	1,705,000		1,475,420	1,705,000	229,580		
시군비	1,705,000		1,475,420	1,705,000	229,580		
기 타							

* 보조율 : 국비(기금) 80%, 도비 10%, 시군비 1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3,289,265	13,289,26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어른 한부모가 겪는 빈곤과 자녀양육 외에 학업중단·취업훈련 부족 등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한부모가족이 사회편견을 극복 하고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9,600천원**(국비 288,000, 도비 21,600)

※ 증감 사유 : 2021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2020.12.11.) 반영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장·군수

○ 사업 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인 청소년(만 24세 이하) 한부모가족
-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월 35만원), 검정고시학습비(연 154만원 이내), 자립촉진수당(월 10만원)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4 제1항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의 4(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지원)**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한부모가 주거 마련 등 자립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283,600천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268,520천원 (연평균 500명) ※ 중위소득 52%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20만원을 지원받고, 본 사업비에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음 ○ 자립촉진수당 : 12,000천원 (연평균 50가구) ○ 검정고시 지원 : 3,080천원 (연 4가구) (변경) ▣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 : 360,000천원 ○ 청소년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 344,200천원 (연평균 550명) ※ 중위소득 52%이하의 청소년한부모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 자녀양육비 등 지원' 사업비에서 20만원을 지원받고, 본 사업비에서 15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음 ○ 자립촉진수당 : 12,000천원 (연평균 50가구) ○ 검정고시 지원 : 3,800천원 (연 5가구)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60,000		283,600	360,000	76,400		
국 비	288,000		226,880	288,000	61,120		기금
도 비	21,600		17,016	21,600	4,584		
시군비	50,400		39,704	50,400	10,696		
기 타							

* 보조율 : 국비(기금) 80%, 도비 6%, 시군비 14%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7,301	247,301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한부모가족 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 무주택 한부모가족이 주거로 인한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덜고, 자립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정된 주거 공간 및 입주자에 대한 상담과 직업훈련 연계 등 자립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9,200천원**(국비 79,200)

※ 증액 사유 : 2021년 한부모가족 임대주택 신규 3호 매입 및 운영기관 종사자 인건비 기준 상향에 따른 국고보조금 확정내시(2021.3.24.) 반영

○ 사 업 량 : 매입임대주택 24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건강가정지원센터(충남도 거점 운영기관)

○ 사업 내용 : 주택 임대보증금, 종사자 인건비(1명), 운영비, 입주자 상담·직업훈련·취업 연계 등

○ 지원근거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8조(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주택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민주택을 분양하거나 임대할 때에는 한부모가족에게 일정 비율이 우선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한부모가족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56,100천원 ○ 인건비(1명) : 1명 × 2,600천원 × 12월 = 31,200천원 ○ 기관운영비 : 1개소 × 600천원 × 12월 = 7,200천원 ○ 임대보증금(증액) 21호 × 500천원 = 10,500천원 ○ 프로그램 사업비 : 1개소 × 600천원 × 12월 = 7,200천원 (변경) ▣ 한부모가족매입임대주택 주거지원 : 79,200천원 ○ 인건비 : 1명 × 2,800천원 × 12월 = 33,600천원 ○ 기관운영비 : 1개소 × 600천원 × 12월 = 7,200천원 ○ 임대보증금(증액) 21호 × 400천원 = 8,400천원, (신규) 3호 × 8,000천원 = 24,000천원 ○ 프로그램 사업비 : 1개소 × 500천원 × 12월 = 6,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79,200		56,100	79,200	23,100		
국 비	79,200		56,100	79,200	23,100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58,400	58,400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가족, 다문화가족 등 가족 유형별로 이원화 되어 있는 가족지원서비스를 통합하여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서비스 제공

○ 사업 위치 :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3,143,127천원**(국비 2,417,790, 도비 725,337)

※ 증감 사유 : 2021년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1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13개소)

○ 사업 내용 : 부모교육, 가족상담, 다문화가정 언어지원, 가족문화 등 가족 프로그램 제공

○ 지원 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1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건강가정지원센터의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가정문제의 예방상담 및 치료, 건강가정의 유지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가족문화운동의 전개, 가정 관련 정보 및 자료제공 등을 위하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4,885,520천원 ○ 13개소 × 평균 375,809천원 = 4,885,520천원 ※ 시군별 상이(유형, 사업별 차등) (변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4,835,580천원 ○ 13개소 × 평균 371,968천원 ≒ 4,835,580천원 ※ 시군별 상이(유형, 사업별 차등)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835,580	0	4,885,520	4,835,580	-49,940		
국 비	2,417,790		2,442,760	2,417,790	-24,970		기금
도 비	725,337		732,828	725,337	-7,491		
시군비	1,692,453		1,709,932	1,692,453	-17,479		
기 타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130,387	3,130,387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조수연 (행) 4986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현황(건가·다가 포함)

(2021. 3월 기준)

센터명	소 재 지 (전화번호)	운 영 주 체		센터장	종사자수 (339)		위탁기간 (개소일)
		법 인 명	대표자		상 근 (294)	비상근 (45)	
천안 (건가)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29-12 백석대학 빌딩 11층 (070-7733-8300)	학교법인 백석대학교	장종현	최명민	24	1	'19. 1~'21.12 ('05. 2. 1.)
천안 (다가)	천안시 서북구 동서대로 17-17 (1577-8653)	(재)기독교대한 감리회하늘중앙 교회	유영환	윤연한	29	-	'19. 1~'21.12 ('14. 1. 1.)
공주 (통합)	공주시 우금티로 753 (853-0881)	(사) 공주대 교육나눔	박상옥	박상옥	17	1	'19. 1~'21.12 ('11. 2. 1.)
보령 (통합)	보령시 한내로 45 2층 (041-936-8506)	대한구세군유 지재단	김필수	양수정	17	-	'19. 1~'21.12 ('19. 1. 1.)
아산 (통합)	아산시 시장길 29 시민문화복지센터 4층 (548-9772)	(사)글로컬센 터	이지아	조삼혁	31	7	'20. 1~'22.12 ('10. 2. 26.)
서산 (통합)	서산시 고운로 239, 3층 (동문동, 고운빌딩) (664-2710)	(재)서산시 복지재단	임태성	류순희	24	-	19. 1~'21.12 ('17. 1. 1.)
논산 (통합)	논산시 관촉로 277번길 23-13 (041-733-7800)	(학)건양교육재 단	구본정	이진	18	6	'19. 1~'21.12 ('08. 9. 2.)
계룡 (통합)	계룡시 엄사면 엄사 중앙로 94, 4층 (042-551-1133)	(재)기독교 한국침례회	진창섭	이희원	8	6	'19.5.~'20.12. ('19. 5. 1.)
당진 (건가)	당진시 시청1로 38(수청동)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360-3200)	(재)당진시 복지재단	왕현정	김민정	25	-	'19. 1~'21.12 ('07. 5. 1.)
당진 (다가)	당진시 시청1로 38(수청동) 당진시종합복지타운 4층 (360-3160)	(재)당진시 복지재단	왕현정	박선영	15	10	'19. 1~'21.12 ('09. 7. 1.)
금산 (통합)	금산군 금산읍 군청5길 35(041-750-3990)	금산군	금산군수	박정미	11	7	**직 영** ('16. 1. 1.)
부여 (통합)	부여군 규암면 아름1로 64 (041-830-2900)	부여군	부여군수	임도연	10	6	**직 영** ('08. 3. 10.)
서천 (통합)	서천군 서천읍 서천로 38 2층(952-1910)	사회복지법인 윤정복지재단	김재현	지승훈	15	-	'20.1 ~'22.12 ('10. 2. 25)
청양 (통합)	청양군 청양읍 칠갑산로 4길 37 (944-2333)	충남도립대 산학협력단	한상완	이재철	11	1	'20.1 ~'22.12 ('11. 2. 14.)
홍성 (통합)	홍성군 홍성읍 조양로 75번길 17 (631-9337)	(사)충남기독교 사회봉사회	김정순	김인숙	20	-	'19. 1~'21.12 ('10. 2. 17.)
예산 (통합)	예산군 예산읍 산성공원 2길 15번지 (339-8382)	예산군	예산군수	구본학	8	-	**직 영** ('16. 1. 1.)
태안 (통합)	태안군 태안읍 백화로 180, 1층(교육문화센터) (670-2396, 2523)	태안군	태안군수	가순선	11	-	**직 영** ('09. 6. 14.)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 가족지원센터운영(시군)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도모

○ 사업 위치 : 2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79,084천원**(국비 214,680, 도비 64,404)

※ 증감 사유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2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천안, 당진)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이 우리 사회에 조기 적응·정착할 수 있도록 가족, 성평등, 인권, 사회통합, 상담, 사례관리, 홍보 및 자원연계 등 사업 추진

○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1항 및 제6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라 지정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4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 및 지원센터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469,900천원 ○ 센터 기본운영비: 191,000천원×2개소(가형) = 382,000천원 ○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운영비(천안) : 81,900천원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천안,당진) : 6,000천원 ※ 가형 : 천안, 당진 (변경)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 : 429,360천원 ○ 센터 기본운영비: 191,000천원×2개소(가형) = 382,000천원 ○ 다문화 교류·소통공간 운영비(천안) : 41,400천원 ○ 찾아가는 결혼이주여성 다이음 사업(천안, 당진) : 5,960천원 ※ 가형 : 천안, 당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29,360		469,900	429,360	-40,540		
국 비	214,680		234,950	214,680	-20,270		기금
도 비	64,404		70,485	64,404	-6,081		
시군비	150,276		164,465	150,276	-14,189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3,325	273,325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다문화)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사회복무요원을 배치하여 복지업무 지원으로 병역이행

○ 사업 위치 : 2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6,720천원**(국비 16,720)

※ 증감 사유 : 2021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2개소(아산, 당진)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2개 시·군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 배치된 사회복무요원의 인력경비 지원(급여, 교통비, 피복비 등)

○ 지원근거 :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 제1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41조(보수지급)

①복무기관의 장은 매년 「공무원보수규정」제5조 별표13의 군인의 봉급표에 의하여 소집일(군사교육기간 포함)부터 영 제62조제1항의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월 보수지급일 또는 복무기관에서 정한 날에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를 지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15,090천원 ○ 7,545천원 × 2개소 = 15,090천원(아산, 당진) (변경) ▣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16,720천원 ○ 8,760천원 × 1개소 = 8,760천원(아산) ○ 7,960천원 × 1개소 = 7,960천원(당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720		15,090	16,720	1,630		
국 비	16,720		15,090	16,720	1,63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500천원(도비 1,500)

※ 증감 사유 : 사회복지시설(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1,500천원(도비 1,500) ○ 5명 × 50,000원 × 6개월=1,5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	0	0	1,500	1,5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1,500	0	0	1,500	1,500	0	
시군비	0	0	0	0	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당진시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860천원**(도비 4,860)

※ 증감 사유 : 사회복지시설(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2개소 5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당진시

○ 사업 내용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제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16,200천원(도 4,860, 시군 11,340) ○ 29명 × 50,000원 × 6개월 = 8,700,000원(천안) ○ 25명 × 50,000원 × 6개월 = 7,500,000원(당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6,200	0	0	16,200	16,2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4,860	0	0	4,860	4,860	0	
시군비	11,340	0	0	11,340	11,34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지원
	통 계 목	자치단제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5,260천원**(도비 55,260)

※ 증감 사유 : 사회복지시설(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15개소 614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에게 정액급식비 지원(월 50천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 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 184,200천원(도 55,260, 시군 128,940) ○ 건강가정지원센터 : 60명 x 50,000원 x 6개월 = 18,000,000원 ○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554명 x 50,000원 x 6개월 = 166,200,000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84,200	0	0	184,200	184,2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55,260	0	0	55,260	55,260	0	
시군비	128,940	0	0	128,940	128,94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조수연 (행) 4986

충남 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종사자의 인건비 추가 지급을 통한 종사자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충남다문화가족지원거점센터(아산시 소재)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270천원**(도비 5,270)

※ 증감 사유 :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추가 지원

○ 사 업 량 : 충남다문화가족지원 거점센터 종사자 5명

○ 사업시행방법 : 직접수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

○ 사업 내용 : 충남 다문화가족지원 거점 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계획(도지사 방침, 2021)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변경) ▣ 충남 다문화가족지원 거점 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 사무국장 : 1명 × 12개월 = 3,720천원 ○ 팀장 : 1명 × 12개월 = 756천원 ○ 팀원 : 3명 × 12개월 ≒ 794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270		0	5,270	5,270	0	
국 비	0				0		
도 비	5,270		0	5,270	5,270		
시군비	0				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8,000	18,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최성희 (행) 4987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종사자의 인건비 추가 지급을 통한 종사자 근무의욕 고취 및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7,419천원**(도비 37,419)

※ 증감 사유 : 센터 종사자의 사기진작 및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해 인건비 추가 지원

○ 사 업 량 : 센터 종사자 118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내용 :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의 인건비 수준이 보건복지부 소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보다 낮아 사기진작 차원에서 추가 지원

○ 지원근거 :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 제1항 및 제2항,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지원 계획(도지사 방침, 2021)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법률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변경) ▣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 센터 종사자 인건비 추가 지원 = 124,730천원 ○ 센터장 : 8명 × 12개월 = 46,262천원 ○ 사무국장 : 4명 × 12개월 = 15,854천원 ○ 팀장 : 33명 × 12개월 = 41,142천원 ○ 팀원 : 73명 × 12개월 ≒ 21,47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24,730	0	0	124,730	124,730	0	
국 비	0				0		
도 비	37,419			37,419	37,419		
시군비	87,311			87,311	87,311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0,000	270,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최성희 (행) 4987

가족역량강화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가족역량강화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취약·위기가족이 가진 복합적 문제해결 및 욕구해소를 위해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기능 회복과 정서·경제적 자립역량 강화 도모

○ 사업 위치 : 6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22,773천원**(국비 325,210, 도비 97,563)

※ 증감 사유 : 천안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 국고보조금 확정내시('20.12.14.) 반영

○ 사 업 량 : 6개소(천안, 보령, 아산, 논산, 당진, 태안)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6개 시군 건강가정지원센터 및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취약가족(기준 중위소득 72%이하 한부모가족 등) : 자녀 학습정서지원(배움지도사 파견), 생활도움지원(긴급일시돌봄, 개인활동·정서지원서비스), 부모교육·가족관계·자녀양육교육 프로그램 및 자조모임
- 긴급위기가족(재난·사고 등 위기직면가족) : 심리·정서 지원(지지리더 파견), 긴급 가족돌봄 지원, 전문상담

○ 지원근거 :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 제1항,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

건강가정기본법 제21조(가정에 대한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가정이 원활한 기능을 수행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한부모가족지원법 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에게 다음 각 호의 가족지원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 : 632,200천원 - 167,260천원 × 1개소(천안) = 167,260천원, 84,420천원 × 2개소(보령,아산) = 168,840천원 - 144,860천원 × 1개소(당진) = 144,860천원, 75,620천원 × 2개소(논산,태안) = 151,240천원 (변경) ▣ 가족역량강화지원사업(취약위기가족지원) : 650,420천원 - 185,480천원 × 1개소(천안) = 185,480천원, 84,420천원 × 2개소(보령,아산) = 168,840천원 - 144,860천원 × 1개소(당진) = 144,860천원, 75,620천원 × 2개소(논산,태안) = 151,2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50,420		632,200	650,420	18,220		
국 비	325,210		316,100	325,210	**9,110**		
도 비	97,563		94,830	97,563	**2,733**		
시군비	227,647		221,270	227,647	**6,377**		
기 타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326,690**	326,69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이윤지 (행) 2044

아이돌봄지원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아이돌봄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부모의 맞벌이 등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의 만 12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 부모의 양육부담 경과 및 시설보육의 사각지대 보완

○ 사업 위치 : 15개 시 · 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690,047천원**(국비 12,100,265, 도비 1,589,782)

※ 증감 사유 : 2021년 아이돌봄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증액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15개 시군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건강가정지원센터(2),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9), 시·군 직영(4)

○ 사업 내용 : 소득기준별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차등 지원

- (시간제 돌봄) 3개월 이상~만 12세 이하 아동, 시간 당 10,040원, 정부지원 연간 840시간 이내
- (영아종일제 돌봄) 3개월 이상~만 2세 이하 영아, 시간 당 10,040원, 정부지원 월60~200시간 이내

※ 소득유형 : 중위 75%, 120%,1 50%이하, 150%초과

○ 지원근거 :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 제1항

아이돌봄지원법 제3조(아이돌봄 지원의 원칙)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보는 아이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아이돌봄을 지원하여야 한다.한 재정적·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아이돌봄지원사업 : 17,128,887천원 ○ 15개 시·군 × 평균 1,141,925천원 = 17,128,887천원 ※ 시군별 수요에 따라 상이 (변경) ▣ 아이돌봄지원사업 : 17,270,954천원 ○ 15개 시·군 × 평균 1,151,397천원 ≒ 17,270,954천원 ※ 시군별 수요에 따라 상이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270,954		17,128,887	17,270,954	142,067		
국 비	12,100,265		11,990,221	12,100,265	110,044		
도 비	1,589,782		1,580,175	1,589,782	9,607		
시군비	3,580,907		3,558,491	3,580,907	22,416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4,886,253	14,886,253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조수연 (행) 4986

+

글로벌 다문화 다공감 에세이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 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문화 소외계층 지역문화 격차 해소 및 이주민과 선주민의 소통으로 다문화 사회에 대한 이해력과 다문화 수용성 증진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7. ~ 2021. 12.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000천원**(도비 10,000)

※ 증감 사유 : 다문화 소외계층 지역문화 격차 해소를 위한 신규사업 필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아산시 다문화여성 문화예술 동아리 공연, 문화예술 공연 제공, 다문화가족 행복 스토리 제작, 다문화가족 도전 골든벨 등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글로벌 다문화 다공감 에세이 : 22,000천원** ○ 공연 출연료 및 연출료 : 1,400,000원 × 5회 = 7,000천원 ○ 홍보비 및 인쇄비 : 2,050,000원 × 1회 = 2,050천원 ○ 운영비 : 2,610,000원 × 1회 = 2,610천원 ○ 무대시설 임차료 : 6,900,000원 × 1회 = 6,900천원 ○ 영상제작비 : 3,440,000원 × 1회 = 3,4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2,000	0	0	22,000	22,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0,000			10,000	10,000		
시군비	10,000			10,000	10,000		
기 타	2,000			2,000	2,000		자부담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다문화이주민 지원사업	정책사업	여성능력개발 및 복지활동전개
	단위사업	다양한 가족에 대한 지원
	세부사업	다문화가족 행복가꾸기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외국인주민의 한국어교육을 통한 사회·학교생활의 안정적 정착 도모

○ 사업 위치 : 아산시

○ 사업 기간 : 2021. 7. ~ 2021. 12. (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17,000천원**(도비 17,000)

※ 증감 사유 : 다문화·외국인주민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신규사업 필요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 사업 내용 :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한국어교실, 다문화 및 중도입국 아동 방과 후 한국어교육 및 기초학습 돌봄 교실 운영, 한국사회 이해 및 문화체험

○ 지원 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 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하고 경제·사회·문화 등 각 분야에서 사회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충청남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지원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도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와 지역사회 조기 정착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다문화이주민 한국어교실 등 지원사업 : 34,000천원 ○ 강사료 : 31,200천원 -기초반 : 40,000원 × 2시간 × 5일 × 26주 = 10,400천원 -심화반 : 40,000원 ×3시간 × 4일 × 26주 = 12,480천원 (금) 40,000원 × 2시간 × 26주 = 2,080천원 -성인한국어 : 40,000원 × 3시간 × 26주 × 2인 = 6,240천원 ○ 교재비 : 667천원 - 기초반 (한국어) 11,000원 × 13권 = 143천원 (수 학) 20,000원 × 13권 = 260천원 - 심화반 : 8,000원 × 3권 × 11명 = 264천원 ○ 운영비 : 2,133천원 - 2,133,000원 × 1회 = 2,13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4,000	0	0	34,000	34,000	0	신규
국 비	0				0		
도 비	17,000			17,000	17,000		
시군비	17,000			17,000	17,000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	-	-	-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정책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및 지원활동 전개
	단위사업	다문화가정활성화
	세부사업	다문화가정 삶의 질 향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다문화가족에 대한 교육·상담, 통·번역, 정보제공, 역량강화지원 등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조기적응, 사회·경제적 자립지원 및 사회통합 도모

○ 사업 위치 : 15개 시·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 (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808,387천원**(국비 2,160,298, 도비 648,089)

※ 증감 사유 : 2021년 다문화가족 특성화사업 국고보조금 감액 확정내시 반영

○ 사 업 량 : 15개소(통번역지원사 24명), 13개소(언어발달지도사 18명), 12개소(이중언어코치 16명), 15개소(방문교육지도사 96명), 13개소(사례관리사 16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방문교육사업, 사례관리사업,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사업, 자녀 언어발달지원사업, 이중 언어 가족환경조성사업, 결혼이민자 역량강화지원 등 제공

○ 지원근거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 제4항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2조(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등)

④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6. 다문화가족을 위한 통역·번역 지원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다문화 특성화 사업 : 4,331,596천원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 : 17,536천원 × 96명 = 1,683,456천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31,825천원 × 16명 = 509,200천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30,050천원 × 24명 = 721,200천원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34,680천원 × 18명 = 624,240천원 수당 70천원 ×12개월 × 7명 = 5,880천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30,070천원 × 16명 = 481,120천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한국어교육) : 30,000천원 × 10시군 = 300,000천원 1,300천원 × 5시군 = 6,500천원 (변경) ▣ 다문화 특성화 사업 : 4,320,596천원 ○ 자녀양육 및 자녀생활 등 방문교육 서비스사업 : 17,536천원 × 96명 = 1,683,456천원 ○ 다문화가족 사례관리 지원 : 31,825천원 × 16명 = 509,200천원 ○ 결혼이민자 통번역서비스 지원 : 30,050천원 × 24명 = 721,200천원	

산출 기초	○ 다문화가족 자녀 언어발달지원 : 34,680천원 × 18명 = 624,240천원 수당 70천원 ×12개월 × 7명 = 5,880천원 ○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사업 : 30,070천원 × 16명 = 481,120천원 ○ 결혼이민자 역량강화 지원(한국어교육) : 19,700천원 × 15시군 = 295,5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320,596		4,331,596	4,320,596	-11,000		
국 비	2,160,298		2,165,798	2,160,298	**-5,500**		기금
도 비	648,089		649,739	648,089	**-1,650**		
시군비	1,512,209		1,516,059	1,512,209	**-3,850**		
기 타	0				**0**		

* 보조율 : 국비(기금) 50%, 도비 15%, 시군비 35%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480,058**	2,480,058	-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가족다문화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소병욱 (행) 4974	강혜련 (행) 4997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저소득층·한부모·장애 등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체험활동, 학습 지원, 상담 등 종합서비스을 통해 건강한 성장과 자립 역량 배양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872,852천원**(국비 1,872,852)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진흥과-1712(2020. 5. 7.)호의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 사 업 량 : 14개 시군, 2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계룡시 제외)

○ 사업 내용 : 취약계층 청소년(초4~중2) 대상 방과 후 학습 지원, 전문 체험활동, 급식지원, 캠프 등 돌봄 서비스 운영

○ 지원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48조의2(청소년 방과 후 활동의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의 정규교육으로 보호할 수 없는 시간 동안 청소년의 전인적(全人的) 성장·발달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 및 활동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3,702,504천원 ○ 운영비 지원 : 3,625,564천원 - 인원축소형(15명) 69,242 X 1개소 = 69,242천원 - 기본지원형(30명) 109,966 X 2개소 = 219,932천원 - 기본지원형(40명) 164,042 X 9개소 = 1,476,378천원 - 농산어촌형(40명) 169,092천원 X 11개소 = 1,860,012천원 ○ 정규직전환 지원 76,940천원 (변경) ▣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 3,745,704천원 ○ 운영비 지원 : 3,550,952천원 - 인원축소형(15명) 69,242 X 1개소 = 69,242천원 - 인원축소형(15명) 67,442 X 1개소 = 67,442천원 - 기본지원형(30명) 109,966 X 1개소 = 109,966천원 - 기본지원형(40명) 137,004 X 1개소 = 137,004천원 - 기본지원형(40명) 164,042 X 9개소 = 1,476,378천원 - 농산어촌형(40명) 169,092천원 X 10개소 = 1,690,920천원 ○ 정규직전환 지원 : 76,940천원 ○ 추가 개소 지원 유보액 : 117,812천원	
총사업비	3,745,704천원(국비 1,872,852 시군비 1,872,85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745,704	0	3,702,504	3,745,704	43,200	0	계속
국 비	1,872,852		1,851,252	1,872,852	21,6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1,872,852		1,851,252	1,872,852	21,6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03,194	1,603,194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재)충청남도 청소년진흥원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진흥원 운영
	통 계 목	출연금 (306-01)

□ 사업개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서부대로766

○ 사업 목적 : 원활한 법인 운영 및 도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청소년 시책 연구개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722,643천원** (도비 722,643)

※ 감액사유 : 2021년도 충청남도 공공기관 예산편성기준에 의거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감액하고, 여건변경에 의한 인건비·운영비·사업비 일부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 사 업 량 : 1개소(청소년진흥원)

○ 사업시행방법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청소년진흥원의 법인 운영비, 인건비(급여, 수당 등), 운영비, 사업비 등 지원

- 육아시간 사용자 대체인력 1명 인건비 추가 편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육성지원)
> ① 도지사는 진흥원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금의 출연과 필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② 도지사는 법인이 수탁 받은 업무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도유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충남청소년진흥원 인건비 : 1,034,577 ▣ 운영비 : 279,975 / ▣ 예비비 : 29,776 ▣ 사업비 : 110,000 / ▣ 순세계잉여금 : △731,685 ※ (붙임) 원가산출내역서	
총사업비	722,643천원(도비 722,643)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본예산(A)	1회추경 (B)	증감(B-A)		
계	753,727		1,226,695	722,643	△504,052		계속
국 비							
도 비	753,727		1,226,695	722,643	△504,052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1,290,000	977,571	312,429	75.7	312,42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의결	비대상
2020년 (2020~2024)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정책관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정성영 (행) 4994

붙임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 원가산출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요 구 액	산 출 기 초	비고 (본예산 대비 증감)
합 계		722,643	기 정 대 비 : △504,052	
법인운영비	소 계	1,344,328		137,633
	인건비	1,034,577	○ 기본급 391,936천원	38,682
			○ 수당 및 복리후생비 193,197천원	27,349
			○ 공무직 보수(법정수당 등) 247,875천원	25,655
			○ 성과급 90,464천원	3,226
			○ 연금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111,105천원	15,215
	운영비	279,975	○ 국내여비 14,670천원	-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480천원	-
			○ 수도광열비 2,160천원	-
			○ 소모품비 14,336천원	-
			○ 도서인쇄비 7,260천원	-
			○ 지급임차료 51,400천원	-
			○ 수선유지비 33,730천원	-
			○ 차량유지비 9,000천원	-
			○ 보험료 7,500천원	-
			○ 지급수수료 54,449천원	-
			○ 업무추진비 26,020천원	-
			○ 교육훈련비 5,000천원	-
			○ 회의운영비 21,200천원	10,000
			○ 자산취득비 17,770천원	-
	예비비	29,776	○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29,776천원	17,506
사업비	소 계	110,000		90,000
	사무처	109,000	○ 종합소식지(뉴스레터)발행 15,000천원	-
			○ 정책성과보고대회 8,000천원	8,000
			○ 충남청소년정책포럼 18,000천원	14,000
			○ 홍보전략 39,500천원	38,500
			○ 충남청소년연구 13,000천원	13,000
			○ 인권경영 5,500천원	5,500
			○ 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10,000천원	10,000
	성문화센터	1,000	○ 홍성성문화센터 비대면 성교육 운영 1,000천원	1,000
잉여금	소 계	△731,685		△731,685
	순세계잉여금	△731,685	○ 2019년도 순세계 잉여금 : 419,256	△419,256
			○ 2020년도 순세계 잉여금 : 312,429	△312,429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인건비	금액	1,034,577천원 (증 110,127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원활한 법인 운영 및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내 용** : 인건비

○ 사업비 산출근거

- 기본급 391,936천원
- 수당 및 복리후생비 193,197천원
- 공무직 보수(법정수당 등) 247,875천원
- 성과급 90,464천원
- 연금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111,105천원

○ 인건비 증감사유

- 최상위직제 신설 및 사무처 인원 증원에 따른 인건비 확보

산출기초

○ 기본급 : 391,936천원

- 원장(1명) : 6,765,000원x1명x12월 = 81,180천원
- 사무처장(1명) : 6,160,721원x1명x12월 = 73,928천원
- 사무처 팀장(2명) : 1,978,151원x2명x12월 = 47,476천원
- 사무처 팀원(7명) : 2,265,773천원x7명x12월 = 190,325천원
- 상담복지센터 법인지원: △21,921천원
- 활동진흥센터 법인지원: 20,948천원

○ 수당 및 복리후생비: 193,197천원

- 사무처 가족수당 : 3,600천원
- 사무처 직책급수행경비: 6,000천원
- 사무처 시간외수당 : 37,866천원
- 사무처 교통비 : 16,120천원
- 사무처 급량비 : 16,120천원
- 사무처 복지포인트 : 7,498천원
- 사무처 연가보상비 : 13,753천원
- 상담복지센터 법인지원: 41,317천원
- 활동진흥센터 법인지원: 50,923천원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인건비	금액	1,034,577천원 (증 110,127천원)
	○ 공무직 보수(법정수당 등): 247,875천원 - 상담복지센터 공무직(17명) 법인지원: 127,895천원 - 활동진흥센터 공무직(3명) 법인지원 : 615천원 - 천안성문화센터 공무직(5명) 법인지원: 59,522천원 - 홍성성문화센터 공무직(5명) 법인지원: 59,843천원 ○ 성과급: 90,464천원 - 진흥원 성과급 : 83,947천원 - 진흥원 성과급(기관장) : 6,517천원 ○ 연금부담금(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 111,105천원 - 사무처 4대보험 법정부담금: 46,272천원 - 사무처 퇴직적립금: 39,385천원 - 상담복지센터 법인지원: 20,699천원 - 활동진흥센터 법인지원: 4,749천원 ※ 인건비 증감사유 - 조직개편(정원 증원) 및 수당(교통보조비) 복원으로 인한 인건비 증액 - 공무직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지원금 증액 - 4대보험요율 인상에 따른 기관부담금 확보		
출 연 필 요 성	○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시책 연구 개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함 ○ 사업계약직을 정규직(공무직)으로 전환함에 따라, 사업비 내 인건비 예산 부족분을 법인지원하여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전문적인 사업 수행		
검토의견	○ '20. 12. 진흥원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원 +2명 증원(67명→69명)과 처우개선을 위한 수당(교통보조비) 복원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에 대한 추경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운영비	금액	279,975천원 (증 10,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원활한 법인 운영 및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내 용** : 운영비		
산출기초	○ 운영비 - **국내여비 14,670천원** * 사무처 1,630,000원×9명 = 14,670천원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15,480천원** * 우편물 발송대 40,000원×12월 = 480천원 * 전화료(인터넷포함) 1,250,000원×12월 = 15,000천원 - **수도광열비 2,160천원** * 수도요금, 난방비(등유구입 등) 180,000원×12월 = 2,160천원 - **소모품비 14,336천원** * 법인 운영물품 1,194,666원×12월 = 14,336천원 - **도서인쇄비 7,260천원** * 인쇄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정기간행물 구독 30,000원×12월 = 360천원 * 홍보브로셔 제작 3,300,000원×1식 = 3,300천원 - **지급임차료 51,400천원** * 임차료 3,465,000원×12월 = 41,580천원 * 장비임차료 2,455,000원×4분기 = 9,820천원 - **수선유지비 33,730천원** * 법인물품 수선유지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운영비	금액	279,975천원 (증 10,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1,157,500원×4분기 = 4,630천원
* 전자결재 유지관리비 6,250,000원×4분기 = 25,000천원
* 사무실 환경조성 인테리어 등 500,000원×1식 = 500천원

- **차량유지비 9,000천원**
* 차량유류대 200,000원×2대×12월 = 4,800천원
* 고속도로 통행료 및 주차료 125,000원×2대×4분기 = 1,000천원
* 차량점검 및 수리비 등 275,000원×2대×4분기 = 2,200천원
* 차량세차비 100,000원×2대×5회 = 1,000천원

- **보험료 7,500천원**
* 자동차(2) 1,650,000원×2대×1년 = 3,300천원
* 화재보험 2,050,000원×1년 = 2,050천원
* 재정보험 2,150,000원×1년 =2,150천원

- **지급수수료 54,449천원**
* 회계감사 및 세무확인 수수료 5,500,000원×1식 = 5,500천원
* 결산 및 공시 수수료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연말정산 수수료 2,000,000원×1회 = 2,000천원
* 관리비 및 기타 수수료 3,000,000원×12회 = 36,000천원
* 노무자분비 300,000원×12월 = 3,600천원
* 이사등기변경비용 462,250원×4회 = 1,849천원
* 기타지급수수료 500,000원×1식 = 500천원

- **업무추진비 26,020천원**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60,000원×12월 = 4,320천원
* 기관시책업무추진비 1,080,000원×12월 = 12,960천원
* 부서시책(사무처) 100,000원×12월 = 1,200천원
* 정원가산업무비 80,000원×68명 = 5,440천원
* 사무처부서업무비 175,000원×12월 = 2,100천원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운영비	금액	279,975천원 (증 10,000천원)
	- 교육훈련비 5,000천원 * 직원소양및직무교육 260,000원×10회 = 2,600천원 * 사무처역량강화 300,000원×8명 = 2,400천원 - 회의운영비 21,200천원 * 회의참석 및 심사수당 150,000원×8명×17회 = 20,400천원 * 회의비(사무용품 등) 100,000원×8회 = 800천원 - 자산취득비 17,770천원 * 사무용 컴퓨터 1,500,000원×4대 = 6,000천원 * 에어콘, 사무용 가구 2,000,000원×4식 = 8,000천원 * 환경정비물품구입 3,770,000원×1식 = 3,770천원		
출 연 필 요 성	○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시책 연구 개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인력 운영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함		
검토의견	○ 규정개정 자문 및 이사회 운영, 채용시험 증가에 따른 회의운영비 추가 소요(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사 업 명	법인 운영비 예비비	금액	29,776천원 (증 17,506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원활한 법인 운영 및 청소년 전문기관으로서의 역할 수행 - **내 용** : 예비비 ○ 사업비 산출근거 - 육아휴직대체인력 인건비: 29,776천원 ○ 인건비 증감사유 - 육아휴직자에 대한 대체 인력 인건비 확보
산출기초	○ 예비비 - 육아휴직대체인력(1명) : 3,308,510원x1명x9월 = 29,776천원
출 연 필 요 성	○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충청남도에서 출연한 청소년 전문기관으로, 청소년 시책 연구 개발, 상담 및 활동진흥 지원 등 청소년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함 ○ 충남청소년진흥원의 고유목적사업 수행에 필요한 필수인력 인건비를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여 편성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운영함 ○ 정규직 육아휴직에 따른 공백기 해소를 위해 육아휴직대체인력 채용
검토의견	○ 법령에 따른 공공기관 육아휴직 활성화와 이로 인한 업무공백 최소화를 위한 육아휴직대체인력비 추경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사 업 명	사업비 뉴스레터 발간	금액	15,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도내 청소년 유관기관 및, 도민(학부모, 청소년 등)에게 청소년 관련 소식을 종합적으로 전달 - **내 용** : 홍보 TF팀 운영, 뉴스레터(종합소식지) 월별 발행 ○ **사업비 산출근거** - 종합소식지 제작비 15,000천원
산출기초	○ 지급수수료 : 3,750,000원×4분기= 15,000천원
출 연 필 요 성	○ 지도자, 유관기관, 구독자 간에 효율적인 정보 네트워크 구축 ○ 청소년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정보 공유로 도민 관심 및 참여도 증진
검토의견	○ 본예산 대비 변동사항 없음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사업비 정책성과 보고대회	금액	8,0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2021년도의 사업추진성과 공유와 평가의 장 마련으로 정책 성과에 대한 환류의 기회 제공 - **내 용** : 2021년도의 사업추진성과 공유와 평가, 2022년 청소년 사업 방향 논의 ○ 사업비 산출근거 - 행사 장소 대관비 2,000천원 - 행사 참석자 초대장제작비 200천원 - 행사 안내용 현수막제작비 50천원 - 행사 홍보물품 800천원 - 행사 다과류 250천원 - 행사 운영물품 300천원 - 정책성과 자문수당 600천원 - 정책성과 FT수당 1,620천원 - 도서 인쇄비 1,750천원 - 사전답사 및 행사진행 여비 430천원		
산출기초	○ 장소대관료 : 2,000,000원×1회= 2,000천원 ○ 초대장 : 2,000원×100장= 200천원 ○ 현수막 : 50,000원×1장= 50천원 ○ 홍보물품 : 8,000원×100개= 800천원 ○ 다과류 : 5,000원×50명= 250천원 ○ 운영물품구입 : 300,000원×1회= 300천원 ○ 자문수당 : 200,000원×3명×1회= 600천원 ○ FT수당 : 270,000원×3명×2회= 1,620천원 ○ 도서인쇄비 : 25,000원×70부= 1,750천원 ○ 국내여비 : 430천원		
출 연 필 요 성	○ 2021년 사업추진 결과와 성과를 공유 및 평가하고, 2022년도 충청남도 청소년 사업의 방향을 논의하여, 서비스 효과성 및 체계성 확립		
검토의견	○ 당해연도 회계연도 사업성과 피드백과 다음연도 사업방향 설정을 위한 성과보고대회를 위한 추경 예산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사업비 충남청소년정책포럼	금액	18,000천원 (증 14,000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지역사회 청소년 현안과 정책을 발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소년 정책 수립 기반 조성 - **내 용** : 청소년정책컨퍼런스 및 정책 포럼 운영 ○ 사업비 산출근거 - 행사 장소대관비 6,000천원 - 행사 중계 방송장비대여 3,000천원 - 행사 참석자 초대장제작비 420천원 - 행사 안내용 현수막제작비 150천원 - 토론회 강사비 2,100천원 - 행사 다과비 750천원 - 행사 운영물품구입 480천원 - 도서 인쇄비 4,200천원 - 사전답사 및 행사진행 여비 900천원 ○ 사업비 증감사유 - 충청남도청소년정책컨퍼런스 사업 통합 추진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산출기초	○ 장소대관료 : 2,000,000원×3회= 6,000천원 ○ 방송장비대여 : 1,000,000원×3회= 3,000천원 ○ 초대장 : 2,000원×70장×3회= 420천원 ○ 현수막 : 50,000원×3장= 150천원 ○ 강사비 : 350,000원×2명×3회= 2,100천원 ○ 다과비 : 5,000원×50명×3회= 750천원 ○ 운영물품구입 : 160,000원×3회= 480천원 ○ 도서인쇄비 : 20,000원×70명×3회= 4,200천원 ○ 국내여비 : 900천원
출 연 필 요 성	○ 충청남도 청소년 정책의 현안과 대안에 대한 청소년지도자, 전문가, 공무원 등의 의견 반영을 통해 완성도 있는 청소년 정책 추진 기여
검토의견	○ 포럼의 성과제고를 위해 충청남도청소년정책컨퍼런스 사업과 통합 추진은 바람직하며, 이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추경 예산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사업비 홍보전략	금액	39,5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본원 사업 내용, 정책 연구 방향, 행사 진행 현황 등에 대해 홍보 사업을 통해 청소년 유관기관과 네트워크 형성 및 도내 인지도 향상
- **내 용** : 홈페이지 재정비 및 본원 홍보물품 제작

○ 사업비 산출근거

- 홈페이지 개편 계약비 22,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비 4,000천원
- 법인 홍보물품 제작 6,500천원
- 법인 달력 제작 7,000천원

○ 사업비 증감사유

- 모바일전용 홈페이지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리뉴얼에 따른 사업비증액

산출기초

○ 홈페이지 개편 : 22,000,000원×1회= 22,000천원
○ 홈페이지 유지·보수 : 1,000,000원×4분기= 4,000천원
○ 홍보물품 제작 : 6,500,000원×1회= 6,500천원
○ 법인 달력 제작 : 7,000원×1,000개= 7,000천원

출연 필요성

○ 홈페이지 재정비를 통한 접근 가능성·편의성 향상
○ 기관 및 청소년 사업 홍보로 본원 긍정적 이미지 구축 및 도내 인지도 확립

검토의견

○ 모바일 홈페이지 구축과 노후화된 홈페이지 개편을 위한 추경 예산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사업비 충남청소년연구	금액	13,0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사각지대 없는 청소년 연구 사업을 계획, 지역 간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시의성을 갖춘 청소년 정책과 사업을 제언하고자 함 - **내 용** : 청소년 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청소년연구 계획 및 운영 ○ 사업비 산출근거 - 도서 인쇄비 5,000천원 - 연구조사 및 개발비 7,000천원 - 자료분석 및 제작회의 1,000천원 ○ 사업비 증감사유 -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비 추가 요청에 따른 사업비 증액		
산출기초	○ 도서인쇄비 : 20,000원×250부= 5,000천원 ○ 연구개발비 : 7,000,000원×1회= 7,000천원 ○ 회의수당 : 100,000원×5명×2회= 1,000천원		
출 연 필 요 성	○ 충청남도 내 존재하는 청소년문제에 대해 탐색 및 연구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또는 사업적 개입의 발판 마련		
검토의견	○ 연구사업의 내실있는 결과물 도출을 위한 연구조사 및 자료분석비 추가 증액 필요(적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사업비 인권경영	금액	5,5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임직원과 이해관계자의 인권 보호·증진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 인권에 대한 의식을 반영하여 진흥원 임직원 전체에 인권경영에 대한 의식을 내재화하기 위함

- 내 용
  - ⋆ 인권경영에 대한 이해, 인권 감수성 향상, 인권 친화적 업무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교육
  - ⋆ 인권보호 및 증진, 조직 내 인권이슈를 발굴하고 효율적인 인권경영 추진을 위한 인권경영위원회를 적극적 운영하여 관련 규정 등 개정 노력
  - ⋆ 인권 경영 관련 선진지 견학을 통하여 우수한 인권관련 제도 및 규정 벤치마킹

산출기초

○ 회의운영비
- 인권경영위원회 개최 (참석수당) : 1,500 × 2회 = 3,000천원
- 인권전문가토론회 개최(참석수당) : 1,000 × 1회 = 1,000천원

○ 국내여비 : 500천원

○ 도서인쇄비 : 500천원

○ 소모품비 : 500천원

출 연 필 요 성

○ 청소년 진흥원 임직원이 인권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관련 사업이나 업무수행에 있어 인권경영관련 의식을 내재화

검토의견

○ 국가인권위원회 및 도의 공공기관 인권경영 적용 요청에 따른 추경 예산 편성 필요(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을 위한 인권경영 매뉴얼 권고 결정 (국가인권위위원회, 2018. 8. 9.)

사 업 명	사업비 평가체계 개선 컨설팅	금액	10,0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직무 또는 직책(직급)에 따른 합리적인 인사 평가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연봉 조정 및 성과급 지급, 승진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고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체계를 강화하기 위함 - 내 용 • 직원 근무성적 평가요소 및 방법 개선을 통한 공정성 확보 및 성과창출의 선순환 유도 • 합리적인 평가결과 도출 및 반영에 따른 승급 기준 마련 • 평가체계 내실화를 통한 인사제도 개선		
산출기초	○ 컨설팅비용 : 10,000천원		
출 연 필 요 성	○ 합리적인 인사 평가체계 마련 및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보상체계 강화		
검토의견	○ 청소년진흥원 안정 및 장기 발전기반 구축을 위해서는 합리적 평가체계 마련이 중요할 뿐만 아니라, 보상체계화의 연계도 시급한 현안으로 추경 예산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 제30조		

사 업 명	사업비 홍성성문화센터 비대면 성교육 운영	금액	1,000천원 (신규)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코로나-19로 집합 교육 제한이 지속됨에 따라 비대면 교육을 통한 성교육 진행을 통해 건전한 성문화 조성을 위함 • 언택트 교육을 통해 성폭력 예방교육 및 양성평등교육으로 건강한 가치관 정립을 지원함 - 내 용 • 성폭력예방교육, 양성평등 교육 • 성행동 교정상담 ○ 사업비 신규 편성 사유 - 비대면 생활이 일상화됨에 따라 사업 운영방향 전환 및 새롭게 요구되는 역량에 대한 체계적 지원 강화		
산출기초	○ ZOOM 이용료 6개월*18천원 = 108천원 ○ 카메라 장비 100천원*4개 = 400천원 ○ 인터넷 연결 40m*라인 1개 연결 = 40천원(몰딩, 타공 등 시공비 별도) ○ 온라인용 마이크 100*4개 = 400천원 ○ 기타소모품 52천원		
출 연 필 요 성	○ 온라인 학습으로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편안한 교육 진행 가능 ○ 실시간 쌍방향 수업으로 교사와 학생 간 소통과 피드백 가능 ○ 물리적 거리가 있는 본원 및 한성협등 유관 기관 회의에도 활용 가능		
검토의견	○ 코로나-19로 인한 대면 교육 제약요인을 극복하고, 비대면 성교육 구현을 위한 체계 구축비용의 추경 예산 반영 필요(적정)		
근거·법령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 「충청남도 청소년 육성 및 지원 조례」제28조, 제 30조		

사 업 명	잉여금 순세계잉여금	금액	△731,685천원
사 업 내 용			
사업개요	○ 사업개요 - 목 적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 처리 - 내 용 • 2019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 419,256천원 • 2020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 312,429천원 ○ 편성 사유 - 2020 회계연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처리		
산출기초	○ 2019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 419,256천원 - (참고 1)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 2020 회계연도 순세계 잉여금 : 312,429천원 - (참고 2) 202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출연 필요성	○ 기관의 투명한 예산·회계 관리를 위한 순세계잉여금 처리		
검토의견	○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잉여금 처리 기준)에 따라 2020 회계년도 결산 결과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처리(반납)를 위한 출연금 감액 조정 필요(적정)		
근거·법령	○ 2021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_잉여금처리		

참고 1 2019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통합보고대회운영	여비	2,000,000	530,000	1,470,000
통합보고대회운영	행사홍보비	8,000,000	4,113,000	3,887,000
청소년안전망인건비	급여	90,655,000	896,160	89,758,840
상담복지인건비	급여	134,926,000	3,421,440	131,504,560
학교밖인건비	급여	57,246,000	2,217,120	55,028,880
활동진흥인건비	급여	95,904,000	13,316,210	82,587,790
충남청소년정책포럼 발족 및 운영	여비	2,000,000	210,000	1,790,000
충남청소년정책포럼 발족 및 운영	행사홍보비	7,304,000	6,265,280	1,038,720
충남청소년백서발간사업	공공요금 및 제세	600,000	577,500	22,500
청소년정책 시군간담회	여비	2,000,000	-	2,000,000
청소년정책 시군간담회	행사홍보비	4,000,000	3,509,100	490,900
홍보전략사업(구.홍보사업)	행사홍보비	39,000,000	36,650,000	2,350,000
지역사회기반한청소년연계사업 (구.경제적 약자 배려사업)	행사홍보비	3,000,000	669,250	2,330,750
충남 청소년 연구	행사홍보비	10,000,000	-	10,000,000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홍보비	15,000,000	-	15,000,000
인권경영	여비	1,160,000	720,000	440,000
인권경영	소모품비	1,000,000	485,000	515,000
인권경영	도서인쇄비	150,000	120,000	30,000
인권경영	행사홍보비	981,920	758,200	223,720
잉여금 운영비	소모품비	6,000,000	1,370,330	4,629,670
잉여금 운영비	지급임차료	8,000,000	7,810,350	189,650
잉여금 운영비	자산취득비	13,968,000	-	13,968,000
합 계				**419,255,980**

참고 2 2020 회계연도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

세부사업	편성목	예산액(원)	집행액(원)	집행잔액(원)
인건비	급여	283,843,280	283,701,860	141,420
인건비	제수당(가족/팀장/시간외)	169,468,000	32,864,964	136,603,036
인건비	무기계약직보수	243,628,000	163,695,866	79,932,134
인건비	기간제보수	8,000,000	4,709,480	3,290,520
인건비	퇴직급여	30,342,000	25,811,130	4,530,870
인건비	복리후생비 (급량/교통/학비/복지)	92,877,730	89,479,675	3,398,055
인건비	복리후생비(기관사대)	32,142,400	31,687,910	454,490
인건비	성과급(기관장)	10,427,000	10,426,680	320
인건비	성과급(직원)	35,557,590	35,435,550	122,040
일반운영비	여비	11,780,000	10,958,600	821,400
일반운영비	공공요금및제세	13,480,000	9,401,020	4,078,980
일반운영비	수도광열비	2,160,000	1,658,566	501,434
일반운영비	소모품비	20,400,000	16,604,550	3,795,450
일반운영비	도서인쇄비	11,260,000	5,877,150	5,382,850
일반운영비	지급임차료	43,400,000	42,763,130	636,870
일반운영비	수선유지비	41,400,000	39,938,600	1,461,400
일반운영비	차량유지비	5,100,000	4,256,827	843,173
일반운영비	보험료	7,500,000	4,401,960	3,098,040
일반운영비	지급수수료	56,754,000	41,774,295	14,979,705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기관시책)	12,960,000	12,273,560	686,440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부서시책)	1,200,000	1,199,000	1,000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기관운영)	4,320,000	4,273,300	46,700
일반운영비	관서업무비(정원가산)	5,440,000	5,432,030	7,970
일반운영비	교육훈련비	7,000,000	3,314,200	3,685,800
일반운영비	회의운영비	2,200,000	20,413,690	1,786,310
일반운영비	자산취득비	46,260,000	45,445,940	814,060
뉴스레터발행	지급수수료	15,000,000	14,958,000	42,000
통합보고대회 운영	행사홍보비	4,000,000	-	4,000,000
학교 밖 청소년 수학여행	행사홍보비	10,000,000	-	10,000,000
인건비(육아휴직)	기간제보수	40,000,000	12,713,300	27,286,700
합 계				**312,429,167**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배치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공공청소년수련시설에 청소년지도사 인건비를 지원하여 시설운영 활성화 및 청소년 활동의 질적 향상 도모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56,480천원**(국비 256,480)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안전과-4596(2020.12.15.)에 따라 홍성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지도사 인건비 1명분 국비 증액

○ 사 업 량 : 21명(문화의집 12, 수련관 9)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2개시군(계룡시, 금산군, 태안군 제외)

○ 사업 내용 : 시·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지도사(21명) 인건비 지원

○ 지원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3조

청소년기본법 제23조(청소년지도사·청소년상담사의 배치 등)

① 청소년시설과 청소년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육성을 담당하는 청소년지도사나 청소년상담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 배치된 청소년지도사와 청소년상담사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활동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청소년지도사 및 청소년상담사의 보수가 제25조에 따른 청소년육성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 489,752천원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20명) : 462,552천원 · 청소년지도사 1급 23,208천원 X 18명 = 417,744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22,404천원 X 2명 = 44,808천원 ○ 정규직 전환지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27,200천원 · 복지포인트 400천원 X 9명 = 3,600천원 · 급식비 1,560천원 X 10명 = 15,600천원 · 명절휴가비 800천원 X 10명 = 8,000천원 ※ 시설별 지원기준 상이	

	(변경) ▣ 청소년수련시설지도사 배치 지원사업 : 512,960천원 ○ 청소년지도사 인건비(21명) : 485,760천원 · 청소년지도사 2급 23,208천원 X 19명 = 440,952천원 · 청소년지도사 3급 22,404천원 X 2명 = 44,808천원 ○ 정규직 전환지원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 27,200천원 · 복지포인트 400천원 X 9명 = 3,600천원 · 급식비 1,560천원 X 10명 = 15,600천원 · 명절휴가비 800천원 X 10명 = 8,000천원 ※ 시설별 지원기준 상이	
총사업비	512,960천원(국비 256,480, 시군비 256,4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512,960	0	489,752	512,960	23,208	0	계속
국 비	256,480		244,876	256,480	11,604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256,480		244,876	256,480	11,604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55,480	227,349	28,131	88.9%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김민호 (행) 4985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지역사회 청소년 참여활동 활성화사업
	통 계 목	차지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 참여활동 지원 확대 및 참여모델 유형 다양화
○ 사업 위치 :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5,000천원**(국비 35,000)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정책과-1363(2021. 4. 20.)호와 관련, 2021년 여성가족부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국고보조금 신규 편성
○ 사 업 량 :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여성가족부 공모 선정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천안시 청소년의원 구성, 참여활동 교육, 의제 발굴 및 토론, 정책반영 활동 등을 통한 청소년 참여활성화의 새로운 모델 구축
○ 지원 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

청소년기본법 제5조의2(청소년의 자치권 확대)
① 청소년은 사회의 정당한 구성원으로서 본인과 관련된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 원활하게 관련 정보에 접근하고 그 의사를 밝힐 수 있도록 청소년 관련 정책에 대한 자문·심의 등의 절차에 청소년을 참여시키거나 그 의견을 수렴하여야 하며, 청소년 관련 정책의 심의·협의·조정 등을 위한 위원회·협의회 등에 청소년을 포함하여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절차에 청소년의 참여 또는 의견 수렴을 보장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지역사회 청소년참여활동 활성화 사업 : **35,000천원** ○ 청소년 참여교육 = 12,120천원 · 강사비 14명 X 150천원 = 2,100천원 · 다과비 50명 X 3천원 X 9회 = 1,350천원 · 운영비(홍보, 교육장소 임차 등) = 8,670천원 ○ 멘토교육 퍼실리테이터 인건비 150천원 X 6회 = 900천원 ○ 의제 투표 = 12,750천원 · 홍보비 750천원 X 1식 = 750천원 · 의제투표 플랫폼 개발 12,000천원 X 1식 = 12,000천원 ○ 의제 발굴 및 토론 = 6,250천원 · 멘토 활동비 10명 X 40,000원 X 10회 = 4,000천원 · 다과 45,000원 X 10회 = 450천원 · 자료집 제작 10,000원 X 100권 = 1,000천원 · 교육장소 임차료 800,000원 X 1식 = 800천원 ○ 운영비 전반 = 2,98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35,000		-	35,000	35,000		신규
국 비	35,000		-	35,000	35,000		기금
도 비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육소현 (행) 4992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시군)(도민참여)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정보교육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학교 밖 청소년 대상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0,000천원**(도비 70,000)

※ 증감 사유 : 서산시 사업 포기로 인하여 보조금 감액

○ 사 업 량 : 14개소(서산시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4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이용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 지원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시군) : 150,000천원 - 교육자료 구입, 장비 대여 : 15개 시군 센터 x 5,000천원 = 75,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 15개 시군 센터 x 5,000천원 = 75,000천원	

	(변경) ▣ 4차 산업혁명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소프트웨어 교육 활성화(시군) : 140,000천원 - 교육자료 구입, 장비 대여 : 14개 시군 센터 x 5,000천원 = 70,000천원 - 교육프로그램 강사료 : 14개 시군 센터 x 5,000천원 = 70,000천원	
총사업비	140,000천원(도비 70,000, 시군비 7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0,000		150,000	140,000	△10,000		계속
국 비							
도 비	70,000		75,000	70,000	△5,000		
시군비	70,000		75,000	70,000	△5,0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예원 (행) 4990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 통합지원 서비스 제공으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 도모

○ 사업 위치 : 도내 15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7,400천원**(도비 77,400)

※ 증감 사유 : 계룡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직원 인건비 부족분 보전을 위한 증액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기본인력 인건비 부족분 및 운영관련 사항 지원,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지역특화사업 진행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4.1.21.>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 255,000천원 ○ 17,000천원 × 15개소 = 255,000천원 (변경)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사업 추진 : 258,000천원	

	○ 17,000천원 × 14개소 = 238,000천원 ○ 20,000천원 x 1개소 = 20,000천원	
총사업비	258,000천원(도비 77,400 시군비 180,6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산액(A)	1회추경(B)	증감(B-A)		
계	255,000		255,000	258,000	3,000		
국 비							
도 비	76,500		76,500	77,400	900		
시군비	178,500		178,500	180,600	2,100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	90,000	90,000	-	100%	-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정책관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김민호 (행) 4985

시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기본법에 근거한 전문성을 갖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여 청소년상담사업의 안정·내실화 기여

○ 사업 위치 : 충청남도내 13개 시·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4,712천원**(**도비** 44,712)

※ 증감 사유 : 서산시 여성가족과-9843(2021.3.17.)에 따라 자체 재원을 통한 사업 운영으로 서산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도비보조금 미교부에 따른 교부 잔액 발생

○ 사 업 량 :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109명(당진시센터 공무직 채용 및 서산시센터 자체재원을 통합 사업 운영으로 처우개선비 제외)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직영 또는 위탁)

○ 사업시행주체 : 13개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사업 내용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시·군·구에 설치하는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법인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른 업무의 구체적인 내용과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설치·운영 기준 및 종사자의 자격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165,600천원 · 3년 미만 근무 90천원×67명×12개월 = 72,360천원	

	· 3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 120천원×11명×12개월= 15,840천원 · 5년 이상 근무 150천원×43명×12개월= 77,400천원 (변경) ▣ 시·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 149,040천원 · 3년 미만 근무 90천원×60명×12개월 = 64,800천원 · 3년 이상 ~ 5년 미만 근무 120천원×11명×12개월= 15,840천원 · 5년 이상 근무 150천원×38명×12개월= 68,400천원	
총사업비	149,040천원(도비 44,712천원, 시군비 104,328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9,040	0	165,600	149,040	△16,560	0	계속
국 비							
도 비	44,712		49,680	44,712	△4,968		
시군비	104,328		115,920	104,328	△11,592		
기 타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46,944	38,526	8,418	82%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김민호 (행) 4985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추진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시군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사업 지원으로 지역별 맞춤 운영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74,363천원**(도비 74,363)

※ 증감 사유

- 국비·시군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의 사업비 부족으로, '15년도부터 도비·시군비 추가예산이 편성됨.
- '19년도에 부여센터가 신설되었으나, 예산이 증액되지않았으며 '20년도에는 크게 예산이 감액됨.
- 신규 센터 건립 및 물가상승 등을 고려하여, 인건비·운영비 등 사업비 증액 필요

○ 사 업 량 : 15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 사업 내용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사업비 일부 지원

○ 지원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차별 및 편견을 예방하고 학교 밖 청소년을 존중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사·연구·교육 및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159,600천원 ○ 13,650천원 X 1개소 = 13,650천원 ○ 11,550천원 X 5개소 = 57,750천원 ○ 9,800천원 X 9개소 = 88,200천원 ※ 학교 밖 지원센터 규모에 따라 시군 지원금액 상이	

	(변경) ▣ 시군 학교 밖 청소년 지원 : 247,876천원 ○ 21,364천원 X 1개소 = 21,364천원 ○ 18,207천원 X 5개소 = 91,035천원 ○ 15,053천원 X 9개소 = 135,477천원 ※ 학교 밖 지원센터 규모에 따라 시군 지원금액 상이	
총사업비	247,876천원(도비 74,363천원, 시군비 173,513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47,876	0	159,600	247,876	88,276		계속
국 비							
도 비	74,363		47,880	74,363	**26,483**		
시군비	173,513		111,720	173,513	**61,793**		
기 타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82,500**	82,500	0	10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예원 (행) 4990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설치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 활동공간 제공으로 청소년들의 건전육성기반을 조성하고, 청소년 전용 휴식 공간 제공을 통한 놀이·여가 유형의 다양화

○ 사업 위치

- 충남 아산시 남부로92 / 충남 청양군 청양읍 문화예술로222 / 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33번길 33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89,400천원**(도비 89,400)

※ 증감 사유 : 최대 4개소 지원으로 공모를 실시하였으나, 3개소 지원으로 실사용액 감소

○ 사 업 량 : 청소년 전용 여가·문화공간 3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아산시, 청양군, 홍성군

○ 사업 내용 : 리모델링 등을 통한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사업 지원(공모를 통한 선정)

○ 지원 근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청소년활동진흥법 제5조(청소년활동의 지원)

① 청소년은 다양한 청소년활동에 주체적이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할 충분한 기회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 데 필요한 청소년활동시설,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지도자 등을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설치 : 340,000천원 ○ 4개 시군 x 85,000천원 = 340,000천원 (변경) ▣ 청소년 전용 문화공간 설치 : 298,000천원 ○ 아산시 : 85,000천원 / 청양군 : 100,000천원 / 홍성군 : 113,000천원 ※공모 결과 최종 3개소 선정	
총사업비	298,000천원(도비 89,400천원, 시군비 208,6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98,000	0	340,000	298,000	42,000	0	계속
국 비	0				0		
도 비	89,400		102,000	89,400	△12,600		
시군비	208,600		238,000	208,600	△29,4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00,000	200,000	0	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마을학교 공간조성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마을 교육 공간 마련을 통한 마을 교육 공동체 활성화

○ 사업 위치 : 천안시(공모를 통하여 최종 상세 위치 선정)

○ 사업 기간 : 2021. 6.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30,000천원**(도비 30,000)

※ 증감 사유 : 지역사회 교육활성화를 위하여 천안시 마을학교 조성 리모델링비 지원 신규 편성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마을학교 조성 리모델링비 지원을 통하여 마을과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지속가능 교육 생태계를 조성

○ 지원 근거 : 충청남도교육청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마을교육공동체 조성)
① 교육감은 마을교육공동체의 활성화와 행복교육지구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교육 혁신 사업
2. 학교와 마을을 연계한 교육활동 사업
3. 학부모와 지역민의 교육활동 활성화 사업
4. 작은학교 지원 사업
5. 마을교육공동체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6. 마을교육공동체와 관련된 활동가, 단체의 육성 및 활동 지원 사업
7. 사회적 경제 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
8. 지역 유관기관의 교육관련 특화사업 지원
9. 그 밖에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마을학교 공간 조성 지원 : 90,000천원 ○ 리모델링 비용 90,000천원 x 1개소 = 90,000천원 - 충청남도 : 30,000천원 - 천안시 : 30,000천원 - 충남교육청 : 30,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90,000	0	0	90,000	90,000	0	신규
국 비	0		0	0	0		
도 비	30,000		0	30,000	30,000		
시군비	30,000		0	30,000	30,000		
기 타	30,000		0	30,000	30,000		충남교육청

* 보조율 : 도비 33%, 시군비 33%, 기타(충남교육청) 33%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그린카페(청소년들의 쉼터) 조성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위기 청소년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여가활동과 더불어 진로·성격·대인관계 등 다양한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 복합 공간을 구성,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의사로36번길 49 2층

○ 사업 기간 : 2021. 6. 1. ~ 2021.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37,500천원** (도비 37,500)

※ 증감 사유 : 청소년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청소년 전용 카페 조성 지원을 위하여 신규 편성

○ 사 업 량 : 그린카페 조성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홍성군

○ 사업 내용 : 청소년 여가활동 공간, 개인 및 집단 상담공간 조성 운영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 및 제40조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및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 및 특별자치도에 설치된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시·군·구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업무를 지도·지원하여야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예산의 보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 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그린카페(청소년들의 쉼터) 설치 : 75,000천원 ○ 리모델링 비용 75,000천원 x 1개소 = 75,0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50,000		0	75,000	75,000		신규
국 비			0	0	0		
도 비	37,500		0	37,500	37,500		
시군비	37,500		0	37,500	37,500		
기 타			0	00	0		

* 보조율 : 도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E=A-B-C)	비 고
2020년	75,000	75,000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사업심사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 쉼터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출청소년 조기 발견을 통한 범죄·비행 예방, 신속한 가정복귀와 사회진출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182,863천원**(국비 1,182,863)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1013(2021.03.22.)에 따라 논산시여자단기쉼터 국비 증액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4개 시·군(천안시 3, 아산시 2, 공주시 2, 논산시 1, 홍성군 2)

○ 사업 내용 : 가출 청소년의 생활보호, 정서적 지지 및 심리상담, 의료지원, 학업복귀, 취업지원 등 맞춤형 자립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 쉼터 운영 : 2,309,638천원 ○ 일시쉼터(10개월분) 298,238천원 X 1개소 = 298,238천원 ○ 단기쉼터(14인 미만) 235,504천원 X 3개소 = 706,512천원 ○ 단기쉼터(14인) 264,530천원 X 2개소 = 529,060천원 ○ 단기쉼터(20인 미만) 327,360천원 X 1개소 = 327,360천원 ○ 중장기 쉼터 224,234 X 2개소 = 448,468천원 (변경) ▣ 청소년 쉼터 운영 : 2,365,726천원 ○ 일시쉼터(6개월분) 178,942천원 X 1개소 = 178,942천원	

	○ 단기쉼터(14인 미만) 235,504천원 X 3개소 = 706,512천원 ○ 단기쉼터(14인 미만) 175,380천원 X 1개소 = 175,380천원 ○ 단기쉼터(14인) 264,530천원 X 2개소 = 529,060천원 ○ 단기쉼터(20인 미만) 327,360천원 X 1개소 = 327,360천원 ○ 중장기 쉼터 224,236 X 2개소 = 448,472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365,726	0	2,309,638	2,365,726	56,088	0	계속
국 비	1,182,863		1,154,819	1,182,863	28,044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1,182,863		1,154,819	1,182,863	28,044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190,969	1,190,969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쉼터 운영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가출청소년에게 자립하여 생활할 수 있는 능력과 여건을 갖추도록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30,885천원**(국비 130,885)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2985(2020.12.16.) 확정내시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 사업 내용 : 일정기간 청소년쉼터 또는 회복지원시설 지원을 받은 후에도 가정·사회·학교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거지원·학업지원·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지원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 241,770천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241,770천원 X 1개소 = 241,770천원 (변경) ▣ 청소년 자립지원관 운영 : 261,770천원 ○ 청소년자립지원관 261,770천원 X 1개소 = 261,77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61,770	0	241,770	261,770	20,000	0	계속
국 비	130,885		120,885	130,885	10,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130,885		120,885	130,885	10,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의 근로여건 개선 및 사기진작 도모

○ 사업 위치 : 천안시, 아산시, 공주시, 논산시, 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6,502천원**(도비 26,502)

※ 증감 사유 : 아산시 종사자 수 감소로 인한 처우개선비 감액

○ 사 업 량 : 10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5개 시·군(천안시, 공주시, 아산시, 논산시, 홍성군)

○ 사업 내용 : 청소년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지원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91,080천원 - 지원기준 : 근무년수 3년미만 100천원, 3~5년미만 150천원, 5년이상 180천원 ○ 3년 미만 : 100천원×12개월×33명=39,600천원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천원×12개월×7명=12,600천원 ○ 5년 이상 : 180천원×12개월×18명=38,880천원	

	(변경)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 88,340천원 ○ 3년 미만 : 100천원×12개월×33명 - 100천원x22개월분 = 37,400천원 ○ 3년 이상~5년 미만 : 150천원×12개월×7명 + 150천원x6개월분 = 13,500천원 ○ 5년 이상 : 180천원×12개월×18명 - 180천원x8개월분 = 37,44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88,340	0	91,080	88,340	△2,740	0	계속
국 비	0		0	0	0		
도 비	26,502		27,324	26,502	△822		
시군비	61,838		63,756	61,838	△1,918		
기 타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16,992	16,992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통 계 목	자치단제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정액급식비 지원

○ 사업 위치 : 천안시·공주시·아산시·논산시·홍성군

○ 사업 기간 : 2021. 7.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5,310천원**(도비 5,310천원)

※ 증감 사유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 결정에 따른 증액

○ 사 업 량 : 10개소 59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장·공주시장·아산시장·논산시장·홍성군수

○ 사업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정액급식비 월 50,000원 지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 2항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4조(도지사의 책무)
②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 정액급식비 지원(도) : 17,700천원 ○ 천안시 : 50천원 x 19명 x 6개월 = 5,700천원 ○ 공주시 : 50천원 x 11명 x 6개월 = 3,300천원 ○ 아산시 : 50천원 x 12명 x 6개월 = 3,600천원 ○ 논산시 : 50천원 x 5명 x 6개월 = 1,500천원 ○ 홍성군 : 50천원 x 12명 x 6개월 = 3,600천원	
총사업비	17,700천원 (도비 5,310 시군비 12,39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7,700	0	0	17,700	17,700	0	신규
국 비	0	0	0	0	0	0	
도 비	5,310	0	0	5,310	5,310	0	
시군비	12,390	0	0	12,390	12,390	0	
기 타	0	0	0	0	0	0	

* 보조율 : 도비 30%, 시군비 7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신규 사업)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학교 밖 청소년 전용공간 조성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학교 밖 청소년 지원(도)
	통 계 목	자치단체자본보조금 (403-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공간 및 작업장 , 놀이공간 등 전용공간 조성을 지원하여 학교 밖 청소년 의 자립역량 강화 및 또래와의 소통 활성화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 도비 0)

※ 증감 사유 : 수요조사 결과 적정 사업 대상 미확보로 사업 추진 취소

○ 사 업 량 :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청소년전용공간 조성 희망 시군)

○ 사업 내용 : 전용공간 조성비용 지원(리모델링, 인테리어 공사, 집기구입 등)

○ 지원 근거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교육지원)

제9조(교육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학업에 복귀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초등학교·중학교로의 재취학 또는 고등학교로의 재입학
2.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3의 대안학교로의 진학
3. 「초·중등교육법」 제27조의2에 따라 초등학교·중학교 또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학력이 인정되는 시험의 준비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지원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직업체험 및 취업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직업의 체험과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직업적성 검사 및 진로상담프로그램
2. 직업체험 및 훈련프로그램
3. 직업소개 및 관리
4. 그 밖에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체험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	
총사업비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100,000	0	△100,000		계속
국 비			70,000	0	△70,000		
도 비	0		30,000	0	△30,000		
시군비	0		0	0	0		
기 타							

* 보조율 : 국비 70%, 도비 3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하단은 작성 예시로 수정 작성 제출]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예원 (행) 4990

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역량개발강화
	세부사업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도)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내 전문상담원 파견 및 지속적인 관리로 충청남도 학교폭력 근절 문화 정착과 학교폭력 발생 시 신속한 대처

○ 사업 위치 : 충남지방경찰청(충남 예산군 삽교읍 청사로 201)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사업)

○ 예 산 액 : **68,822천원**(국비 68,822천원)

※ 증감 사유 :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지원과-2874(2020.12.15.)호와 관련, 확정내시 금액 변동에 따른 국고보조금 증액(기타 보수 증액)

○ 사 업 량 :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전문상담원 인력배치 2명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117학교폭력신고센터(경찰청·교육부·여성가족부 합동 운영) 전문상담원 파견·관리를 통해 학교폭력 발생 시 신고 및 신속한 상담·처리

○ 지원근거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교육·계도 등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의 자율적인 학교폭력 예방활동과 피해학생의 보호 및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활동을 장려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청소년 관련 단체 등 민간이 건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련 시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 68,266천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68,266천원 · 급여 2,265천원 × 2명 × 12개월 = 54,360천원 · 제수당 342천원 × 2명 × 12개월 = 8,208천원 · 퇴직급여 217천원 × 2명 × 12개월 = 5,208천원 · 복리후생비 20.4천원 × 2명 × 12개월 = 490천원 (변경) ▣ 도 학교폭력 예방프로그램 운영 : 68,822천원 ○ 무기계약근로자보수 : 68,822천원	

	· 급여 2,265천원 × 2명 × 12개월 = 54,360천원 · 제수당 342천원 × 2명 × 12개월 = 8,208천원 · 퇴직급여 217천원 × 2명 × 12개월 = 5,208천원 · 복리후생비 20.4천원 × 2명 × 12개월 = 490천원 **· 기타보수 278천원 × 2명 = 556천원**	
총사업비	68,822천원(국비 68,822)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68,822		68,266	68,822	556		계속
국 비	68,822		68,266	68,822	556		기금
도 비	0		0	0	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67,706	67,706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육소현 (행) 4992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기능 보강 및 임차료
	통 계 목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403-02)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급변하는 청소년의 성문화 인식에 대응하고,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성교육을 위하여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이전·조성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천안시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400,000천원**(도비 400,000)

※ 증감 사유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시설 노후화 및 임대 계약만료('21.9)에 따른 이전 필요

○ 사 업 량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1개소 이전·설치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

- 공간 이전·확장, 최신 교육기기(VR, 터치스크린 등) 및 임신·출산 간접체험 기자재 도입 등

○ 지원 근거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의 설치·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가치관 조성과 성범죄 예방을 위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교육 전문기관(이하 "성교육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하거나 해당 업무를 전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천안청소년성문화센터 교육시설 이전설치비 : **400,000천원** ○ 설계용역비 : 11,000천원 ○ 신규장소 체험관 등 설치공사(전기, 소방, 벽체, 공통 가설공사 등) : 184,431천원 ○ 스마트 섹슈얼리티 체험관 설치(VR투어/다면영상체험교육 시스템 등) : 154,569천원 (* 스마트 체험관 총 견적 254,569천원 중 100,000천원 천안시 지원) ○ 기 센터 원상복구(철거 등) 공사 : 50,000천원	
총사업비	400,000천원(도비 400,00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400,000		0	400,000	400,000		신규
국 비	-		0	0	0		
도 비	400,000		0	400,000	400,000		
시군비			0	0	0		
기 타			0	0	0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육소현 (행) 4992

청소년 회복지원시설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회복지원시설 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소년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감호 위탁 처분을 받은 청소년에 대하여 보호자를 대신하여 그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자가 상담·주거·학업·자립 등 서비스를 제공

○ 사업 위치 : 충남 논산시 은진면 원앙로1348번길 97

○ 사업 기간 : 2021. 1. 1.~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0천원(국비 0)

※ 증감 사유 : 회복지원시설 폐업(2020. 11. 13. 논산시 평생교육과-13941)에 따른 국고보조금 삭감

○ 사 업 량 : 청소년회복지원시설 1개소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논산시

○ 사업 내용 : 감호 위탁 처분 받은 청소년에게 주거지원·학업지원·취업지원 등 서비스 제공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40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40조

국가 및 지자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청소년복지지원기관 및 청소년복지시설, 관련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0	0	70,000	0	△70,000	0	
국 비	0		35,000	0	△35,000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35,000		△35,00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시군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27,085	27,085	0	100%	0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과목경정, 세부사업경정)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통 계 목	사회보장적수혜금 (301-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원가정의 보호·지원을 받을 수 없는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자립지원수당을 지원하여 퇴소 후 사회 안착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20,700천원**(국비 10,350 도비 10,350)

※ 증감 사유

- 지원 내용상 기존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에서 사회보장적수혜금(301-01)로 통계목 변경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3677(2020.11.24.) 및 487(2021.02.05.)의 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침에 따라 기초자치단체 집행 시 예산 예측이 불가능한 관계로 지방비 부담분 광역자치단체 확보

○ 사 업 량 : 퇴소청소년 지원 **69개월**

○ 사업시행방법 : 시군시행

○ 사업시행주체 : 15개 시군

○ 사업 내용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30만원 지원

○ 지원 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6조(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

①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고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돕기 위하여 상담, 제31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쉼터의 설치·운영, 청소년쉼터 퇴소 청소년에 대한 사후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보호자는 청소년의 가출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가출한 청소년의 가정·사회 복귀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노력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청소년 가출 예방 및 보호·지원에 관한 업무를 「청소년기본법」 제3조제8호에 따른 청소년단체(이하 "청소년단체"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10,350천원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300천원 X 34.5회 = 10,350천원(국비) (변경)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 20,700천원 ○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월300천원 X 69회 = 20,700천원(국비 및 도비)	
총사업비	20,700천원(국비 10,350 도비 10,35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20,700	0	10,350	20,700	10,350	0	
국 비	10,350		10,350	10,350	0		기금
도 비	10,350		0	10,350	10,350		
시군비	0		0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50%, 도비 5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과목경정, 세부사업경정)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996천원**(국비 14,996)

※ 증감 사유

- 출연기관으로의 교부를 위하여 기존 자치단체경상보조금(308-01)에서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로 통계목 변경
-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조사업자 분리를 위해 예산 증액

○ 사 업 량 : 사회복무요원 2명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 사업시행주체 :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 사업 내용 :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지원 근거 :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4.>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14,996천원 ○ 사회복무요원 2명 X 7,200 = 14,400천원 ○ 피복비 298천원 X 2명 = 596천원 * 신규 배치인력에 한하여 피복비 지원	
총사업비	14,996천원(국비 14,996)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996	0	0	14,996	14,996	0	
국 비	14,996		0	14,996	14,996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시군, 세부사업경정)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통 계 목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08-0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복지시설의 공익 목적에 필요한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

○ 사업 위치 : 충청남도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43,380천원(국비 143,380)

※ 증감 사유

- 국비사업의 통계목을 분리하고자 세부사업을 신설하여 변경하고자 함
- 자치단체경상보조 및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보조사업자 분리를 위해 예산 감액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717(2021.02.24.)에 따라 상반기 6개월분 인건비 및 교통비 감액

○ 사 업 량 : 사회복무요원 20명

○ 사업시행방법 : 시군 시행

○ 사업시행주체 : 천안시 외 6개 시군

○ 사업 내용 :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지원 근거 : 병역법 제26조

병역법 제26조(사회복무요원의 업무 및 소집 대상)

① 사회복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복무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6. 4.>

1.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의 공익목적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 사회서비스업무의 지원업무

③ 사회복무요원이 복무하여야 할 분야의 분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6. 4.>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여야 할 사회복무요원은 지방병무청장이 선발하되, 선발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개정 2013. 6. 4.>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출액(총사업비 기준)	비 고
산출 기초	(당초) ▣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161,976천원 ○ 사회복무요원 22명 X 7,200 =158,400천원 ○ 피복비 298천원 X 12명 = 3,576천원 * 신규 배치인력에 한하여 피복비 지원	

	(변경) ▣ 청소년복지시설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 143,380천원 ○ 사회복무요원 19명 X 7,200 = 136,800천원 ○ 사회복무요원 1명 X 3,600 = 3,600천원 ○ 피복비 298천원 X 10명 = 2,980천원 * 신규 배치인력에 한하여 피복비 지원	
총사업비	143,380천원(국비 143,380)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43,380	0	161,976	143,380	-18,596	0	
국 비	143,380		161,976	143,380	-18,596		기금
도 비	0				0		
시군비	0				0		
기 타	0		0	0	0		

* 보조율 : 국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당 사항 없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0년 (2021~2025)	-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이택승 (행) 4991

청소년성문화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정책사업	청소년 보호 및 육성
	단위사업	청소년 자립지원 및 보호
	세부사업	청소년성문화센터 처우개선 지원
	통 계 목	사회복지사업보조 (307-11)

□ 사업개요

○ 사업 목적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처우개선을 통한 안정적인 센터 운영 도모

○ 사업 위치 : 고정형(천안, 홍성), 이동형(예산)

○ 사업 기간 : 2021. 1. 1. ~ 2021. 12. 31.(단년도 사업)

○ 예 산 액 : **10,800천원**(도비 10,800)

※ 증감 사유 : 낮은보수 등으로 이직율이 높은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급을 통해 안정적인 센터운영 도모

○ 사 업 량

- 총 3개소에 처우개선비 지원(고정형성문화센터 2개소, 이동형성문화센터 1개소)
- 총 15명의 종사자에게 처우개선비 지원(개소 당 5인 정원)

○ 사업시행방법 : 공공기관 대행, 민간대행

○ 사업시행주체 : (재)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사)생명과마음

○ 사업 내용 : 청소년성문화센터 종사자 15명 처우개선비 지원

※지원기준 : 근무연수 3년 미만 9만원, 3~5년 미만 12만원, 5년 이상 15만원

○ 지원 근거 :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

충청남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7조(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사회복지사 등의 사기진작과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신변안전 보호 등 근무환경 개선사업
2.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사업
3.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산 출 액	비 고
산출 기초	(신규) ▣ 청소년성문화센터 처우개선비 지원 : **10,800천원** ○ 종사자 처우개선비 : 10,800천원 · 3년 미만 종사자 2명 X 9만원 X 6개월 = 1,080천원 · 3년~5년 종사자 11명 X 12만원 X 6개월 = 7,920천원 · 5년 이상 종사자 2명 X 15만원 X 6개월 = 1,800천원	

□ 예산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기투자	2021년			향후투자	비고
			기정예산(A)	1회추경(B)	증감(B-A)		
계	10,800		-	10,800	10,800		신규
국 비	-		-	-	-		
도 비	10,800		-	10,800	10,800		
시군비							
기 타							

* 보조율 : 도비 100%

□ 전년도 예산 결산 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예산현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집행률 (D=B/A)	다음연도 이월액	비 고
2020년		해	당	없	음	

□ 사전절차 이행여부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공유재산 관리계획	학술용역비 사전심사	물품정수 취득	홍보물 사전심의	공공기관 출연금 의회의결	신규 행사성 보조금심의
반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2021년 (2021~2025)		-	-	-	-	-	-

□ 사업 담당자

실국	과	팀	과장	팀장	주무관
여성가족정책관	-	청소년정책팀	이순종 (행) 2040	이근규 (행) 4975	육소현 (행) 4992